

발 간 등 록 번 호

11-1480000-001526-10



- 환경정책자금
- 수주지원
- 환경컨설팅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이 안내서를 펴내며

환경부는 환경의 질 개선과 녹색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환경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부지원 환경사업 종합안내서」를 최초로 발간한 이후, 환경기업과 관련 기관 등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기존 지원프로그램을 현행화하고 새로 도입된 사업을 추가하여 2022년 기준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이 안내서는 환경 분야별로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과 환경사업 발주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권에는 환경정책자금과 수주지원, 환경컨설팅 등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록 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를 참고한다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사업이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참여 가능한지,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정부지원 환경사업 종합안내서」가 환경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환경정책자금 1

1-1.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3
1-2. 친환경설비투자(용자)	5
1-3.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대출이자 지원)	7
1-4. 청정대기 전환 시설 지원 용자	9

제2장 수주지원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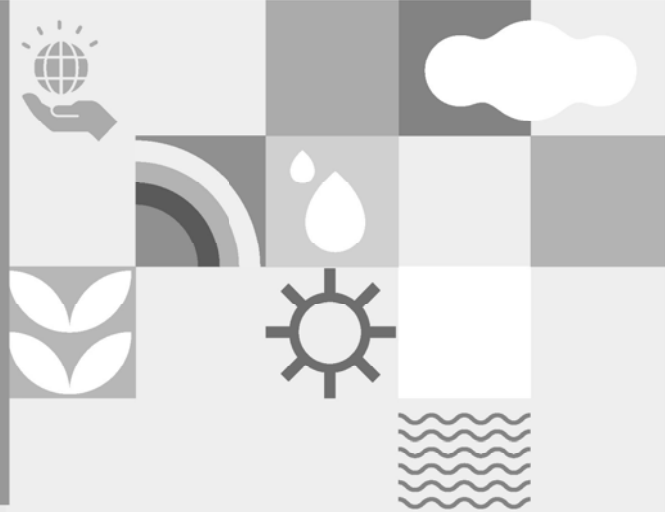
2-1.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13
2-2.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 상용화 지원사업	15
2-3.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	18
2-4.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20
2-5.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22
2-6.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24
2-7.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26
2-8. 환경신기술 현장조사 및 검증수수료 지원	28
2-9.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30
2-10.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35
2-11. 개발도상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37
2-12.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39

2-13.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41
2-14.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43
2-15. 다자개발은행 환경프로젝트 수주지원 사업	45
2-16.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	47
2-17. 녹색기후기금(GCF) 활용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	49
2-18.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및 지원사업	51
2-19.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53
2-20.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55
2-2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58
2-22.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	62
2-23.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사업	65
2-24.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67
2-25.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지원사업	69
2-26.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71
2-27. 물산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	73
2-28. 중소기업 금융 지원 사업	80
2-29.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	81
2-30.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83
2-31. 수요기반 탄소중립 물기술 실증 지원사업	85
2-32. K-뉴딜 물기업 성장지원 프로젝트랩	87

제3장 환경컨설팅 89

3-1. 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91
3-2. 환경성적 산정 지원 사업	93
3-3.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 서비스	95
3-4.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지원	97
3-5. 해외사무소 운영	99
3-6. 환경산업 해외진출 전문컨설팅 지원	101
3-7.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 및 기술지도	103
3-8.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107
3-9.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기업 기술지원사업	110
3-10.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112
3-11.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기술지원	114
3-12. 생태독성, TOC(총유기탄소) 관리 무상 기술지원	116
3-13.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	120
3-14. 자원순환 성과관리 기술진단·지도	122
3-15.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124
3-16. 개도국 환경시설 진단 및 정책 컨설팅 사업	126

제1장 환경정책자금



1-1.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3
1-2. 친환경설비투자(용자)	5
1-3.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대출이자 지원)	7
1-4. 청정대기 전환 시설 지원 용자	9

중소환경기업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융자지원

1-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을 위해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에게 시설설치와 경영안정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총 3,000억원

(단위 : 억원)

계	환경산업	녹색전환
3,000	2,000	1,000

지원 대상

- 환경산업, 녹색전환 분야로 자금 구분 지원

구분	지원대상
환경산업 분야	◦ 중소·중견기업인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장비·장치 등의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녹색전환 분야	◦ 중소·중견기업과 중소·중견 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금 지원

지원 내용

- 시설분야 : 장비·장치·설비의 제작·구입·설치 및 건축비 등 지원
- 운전분야 : 인건비, 원·재료비, 전기요금 등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용자 조건

구분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 한도	비고
환경산업	분기별 변동금리 (‘22년 1분기 1.82%)	10년 이내 (3년거치 7년상환)	최대 80억원	시설
		5년 이내 (2년거치 3년상환)	최대 20억원	운전
녹색전환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22년 1분기 1.82%)	10년 이내 (3년거치 7년상환)	최대 80억원	시설

신청·접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용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처리 절차



문 의 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6, 670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2-2284-1731~1735, 1740, 1741

친환경설비로 교체를 위한 비용 융자지원

1-2. 친환경설비투자(융자)

탄소중립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총 500억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 신증설을 위한 비용 장기저리 융자 지원

지원 범위

- 건축물, 공정 및 장치 등 사업장 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설비·장비로의 교체·신설 비용으로 설계, 부대시설 및 기존시설 철거비 포함
- 지원범위 시설과 함께 “계량기·계측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융자 조건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 한도	비고
인출시점별 변동금리 (‘22년 1분기 1.82%)	10년 이내 (3년거치 7년상환)	최대 80억원	시설

신청·접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용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6, 670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2-2284-1731~1735, 1740, 1741

사업장 온실가스 발생 저감설비 융자지원

1-3.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대출이자 지원)

산업·공정변경 등을 통한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시중은행 대출시 이자의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총 5조원

지원 대상

- 모든 기업(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포함)

지원 내용

- 사업장의 온실가스 발생 저감설비 신증설을 위한 자금 금융기관 대출시 이자 우대금리 지원

우대금리	대출기간	대출 한도	비고
인출시점별 변동금리 (은행별 상이함)	추후확정	추후확정	시설

지원 범위

- 온실가스 발생저감을 위한 시설 신증설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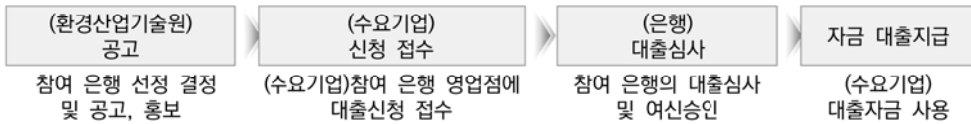
신청·접수

- 선정된 은행의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 접수
※ (환경산업기술원) 참여 은행 선정 즉시 수시 안내 공지 예정

제출 서류

- 선정된 은행의 구비서류 기준에 따름
※ (환경산업기술원) 참여 은행 선정 즉시 수시 안내 공지 예정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6, 670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2-2284-1731~1735, 1740, 1741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

1-4. 청정대기 전환 시설 지원 용자

시멘트 소성로 등 노후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에 고효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1,900억원(재정융자금)

지원 개요

- (지원대상)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 운영 기업(시멘트·정유업)
- (용자기간) 시설분야 10년(3년거치 7년상환)
- (융자금리) 환경부 고시에 의한 분기 변동금리 적용
※ '22년 금리현황(1분기 기준) : 1.82%(환경부 고시금리로 변동 가능)

지원 내용

- 분야구분 및 지원한도

지원대상	사업명	구분	세부분야	지원 한도액	용자기간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 사업장(시멘트·정유업)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용자	시설	<u>미세먼지</u> <u>시설자금</u>	없음 (실비전액)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

- (지원범위) 시설 제작 및 설치 비용(부가세 제외)
 - 직·간접적으로 미세먼지의 발생·배출의 저감, 방지 효과 및 효율개선이 가능한 시설로의 신설, 교체, 증설, 개조
※ 예시: SCR, NSCR, 고효율 저녹스버너 등
 - 상기 시설에 종된 부속시설, 토목공사 및 설계비용 포함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상 먼지·미세먼지 관련 방지시설로써 건축(구조물)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축비용 포함 가능
- 기타 세부사항은 '22년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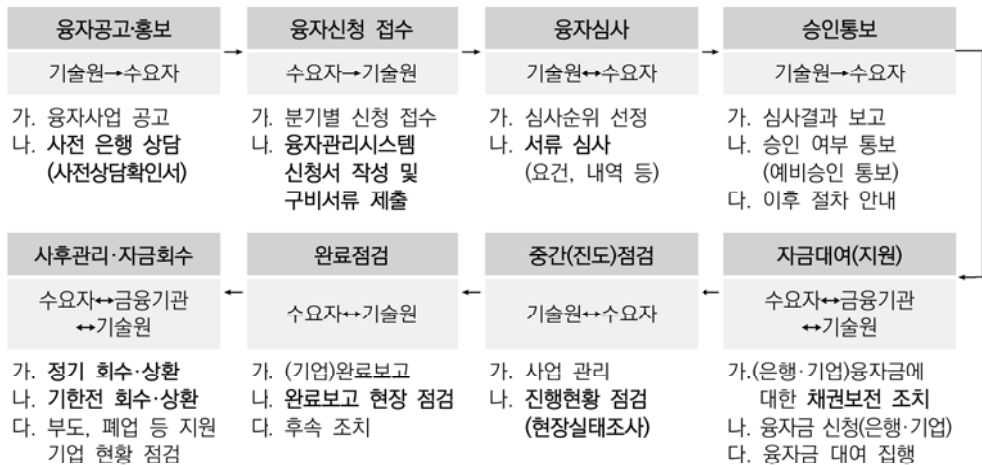
신청·접수

- 청정대기전환시설지원융자 신청 접수(2월중)
※ 1차 접수 및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추가접수 또는 상시접수 운영 가능

제출 서류

-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융자금 취급은행, 신청기업 선택)
- 융자신청 시설, 공사의 견적서 및 계약서(기성 제품 구매 포함)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6

제2장 수주지원



2-1.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13
2-2.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 상용화 지원사업	15
2-3.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	18
2-4.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20
2-5.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22
2-6.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24
2-7.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26
2-8. 환경신기술 현장조사 및 검증수수료 지원	28
2-9.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30
2-10.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35
2-11. 개발도상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37
2-12.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39
2-13.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41
2-14.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43
2-15. 다자개발은행 환경프로젝트 수주지원 사업	45
2-16.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	47
2-17. 녹색기후기금(GCF) 활용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	49
2-18.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및 지원사업	51
2-19.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53
2-20.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55
2-2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58
2-22.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	62
2-23.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 운영비 지원 사업	65
2-24.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67
2-25.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 · 지원사업	69
2-26. 혁신형 물기업 지정 · 지원 사업	71
2-27. 물산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	73
2-28. 중소기업 금융 지원 사업	80
2-29.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	81
2-30.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83
2-31. 수요기반 탄소중립 물기술 실증 지원사업	85
2-32. K-뉴딜 물기업 성장지원 프로젝트랩	87

환경분야 예비·초기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2-1.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녹색혁신성장분야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 멘토링, 컨설팅 프로그램 및 사업화 자금 등을 통해 창업 혁신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총 111.8억원(운영예산 포함)

지원 대상

- 녹색산업분야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 * 일반환경분야(수질, 대기, 폐자원 등) 및 녹색산업 혁신성장 5대 선도분야(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탄소저감분야(지속가능운송,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제고, 스마트시티구축, 에코디자인 등), 4차산업 융복합 분야 등
 - ※ 지원 제외 대상
 - ▷ 국제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자)
 - ▷ 비정상 또는 불량거래처(자)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경우
 - ▷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사업 공고년도 및 직전년도)
 - ▷ 동일 및 유사 사업계획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등

지원 내용

지원구분	지원수*	지원규모	지원내용
예비창업자	75인	최대 50백만원	·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역량 강화 교육
초기창업기업	75개사	최대 100백만원	· 창업아이템 검증 등 시장검증 프로그램 · 투자유치 역량강화 · 창업 사업화 멘토링 등

* 상기 지원금액은 지원과제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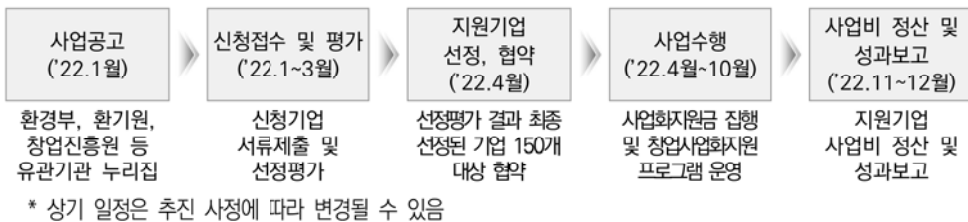
신청·접수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Startup 등 유관기관 누리집을 통한 공고('22.1.20 ~ '22.2.21 18:00 까지) 및 지원서류 접수('22.2.7 ~ '22.2.21 18:00 까지)
- * 공고 및 접수기간은 추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세부내용은 사업공고 확인)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6, 670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획운영실 ☎ 032-540-2115, 2142

우수환경기술의 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 지원

2-2.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 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상용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총 37,700백만원
 - (사업화) 총 29,500백만원 / (상용화) 총 8,200백만원

지원 내용

- 프로그램 2개 이상, 3개 이하 선택 및 사업화 3억원, 상용화 6억원 이내 지원(최대 8개월)

구분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업화	사업화 촉진	컨설팅	사업화 전략 컨설팅, 기술 컨설팅, 경영 컨설팅	최대 0.5억원 (최대 6개월)	중소기업 (정부 70% 민간 30%)
		기술도입	기술이전 지도	최대 1억원 (최대 6개월)	
	제품화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개선 및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최대 2억원 (최대 8개월)	
		인·검증	판매 필수인증 또는 과제 관련 정부 인·검증 취득비용	최대 1억원 (최대 6개월)	
	시장진출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자금유치 컨설팅	최대 0.5억원 (최대 6개월)	
상용화	사업화 촉진		혁신기술 도입	최대 1억원 (최대 6개월)	중소· 중견기업 (정부 50~60%, 민간 40~50%)
	현장 적용	설비실증	실규모 환경설비 제작·설치 및 공인기관 성능평가 소요자금	최대 5억원 (최대 8개월)	
		인·검증	과제 관련 정부 인·검증 취득비용	최대 1억원 (최대 6개월)	
	시장진출		홍보·마케팅 소요자금, 자금유치 컨설팅	최대 0.5억원 (최대 6개월)	

*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환경산업 영위 기업
 - 〈 지원 제외 대상 〉
 -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 금융 불량거래처로 구제 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경우
 - ▷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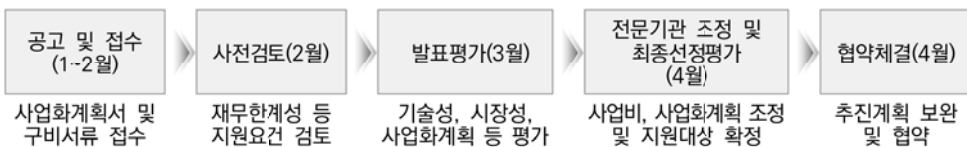
신청·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2.1.20 ~ 2.18. / (접수) '22.2.7. ~ 2.18. 18:00
- 사업화지원시스템(<https://s.konetic.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 사업화계획서 및 자격 증빙서류(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선정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2, 670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02-2284-1739, 1742~8. 1737

→ Tip

- ✓ 사회적기업 인증·지정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기준 10%p 완화
 - ✓ 기술개발(R&D)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목적이어야 함
 -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가점 부여(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최대 5점)
 - (공통) 환경산업단지 입주,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 환경신기술 인·검증, 환경성적표지·녹색인증, 환경경영 우수,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 (상용화) 사업화지원 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체가 수요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22년 사업공고문 참조

녹색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통합 지원

2-3.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화전략, 인검증 등을 통합 지원하여 녹색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지원 규모

- '22년 500억원(신규과제 150억원, 계속과제 350억원)
- * '20~'21년 선정 35개사 및 '22년 신규 선정 15개사, 기업당 10억 원 이내

지원 대상

-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중소기업) 포함
- * 사업화 지원은 신청기업이 녹색기술을 보유한 경우(특허, 인증 등) 지원 가능

구분	세부분야	관련 기술(예시)
청정대기분야	대기오염 저감 소재·부품·장비	저에너지형 대기오염방지시설, 에어필터, 환경촉매, 대기/굴뚝/실내환경 계측·측정장비, 공기청정 건물공조, 공기질 개선 플랫폼 기술, 친환경 자동차 등
자원순환분야 (탈플라스틱 포함)	플라스틱 개선·대체, 폐기물 자원화, 소재·부품·장비	탄소전환 재활용 제품기술, 플라스틱 대체 및 재활용 기술, 폐자원 에너지화, 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적 처리기술, 유용자원 회수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스마트물분야	상·하수도, 비점오염, 통합 물관리, 소재·부품·장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 기술,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담수 플랜트,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통합수자원관리, 수계 수질 평가/관리, 고도 수처리, 누수방지 및 절수 기술 등
기후대응분야	온실가스 저감, 저탄소 서비스·제품, 에너지 전환 기술 등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CCS 및 CCU, Non-CO2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저장, 수소, 수열에너지 등 환경분야 에너지 전환 기술 등
녹색 융·복합 분야	융합형 환경기술, 생물모방 및 생물소재 등	디지털, IoT, AI, 스마트그리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환경산업, 생물생태 특성을 고려한 생태모방기술, 생물자원 활용한 환경친화제품 등

지원 내용

- 사업화와 연구개발(R&D) 사업 동시 지원

구분	추진단계	추진방식	공모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사업화	-	개별	자유	○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 자금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연 7.5억원 이내 (총 3년 22.5억원 이내)
연구개발(R&D)	실용화 또는 실증화			○ 실용 또는 실증화 연구개발비	연 2.5억원 이내 (총 3년 7.5억원 이내)

* 자세한 사항은 '22년 사업공고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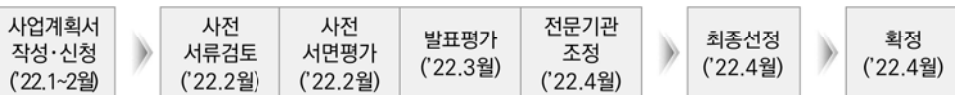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1.12.30. ~ '22.2.3. 18:00
- 접수기간 : '22.1.17. ~ '22.2.3. 18:0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기업성장전략서,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화 계획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제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등
- * 자세한 사항은 '22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 절차



* 공고 및 평가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2, 670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탄소기술실 ☎ 02-2284-1362, 1363, 1365, 1376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 02-2284-1489~90

중앙·지방,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녹색산업

2-4.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환경오염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축적된 역량과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제 규모의 현장 실증화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도모

지원 규모

- 총 5,000백만원(운영예산 포함)

지원 대상

- 환경오염 저감 혁신설비·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다만, 설비 설치 대상기업(설비수요기업)은 해당지역* 내 위치한 중소·중견 기업에 한함

* (해당지역) 인천시 남동공단(남동구 소재)

※ 지원 제외대상

-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 금융 불량거래처로 구제 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경우
- ▷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

지원 내용

- 지역 내 환경분야 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에 대해 혁신설비·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의 과제를 선정하여 설비수요기업에 실제 규모의 실증을 지원·관리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규모	사업비 구성		지원조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혁신설비 관련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	최대 6억원	10개소 내외	중소 기업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 60% 이하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40% 이상
				중견 기업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50% 이상

신청·접수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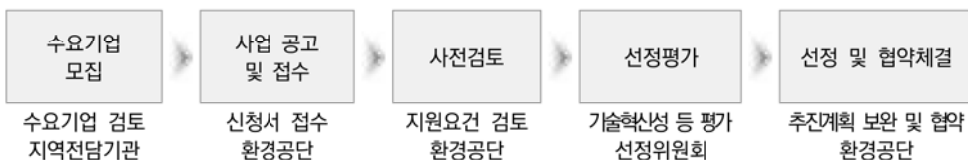
▶ 접수처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C동 2층)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고용 증빙자료(인건비 계상시), 기타 증빙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22년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공고문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2, 6704
-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 032-590-4824, 4825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녹색 신산업 육성

2-5.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재활용 기업과 재활용 소재기업의 생산 인프라 구축, 제품고도화, 유통망 확장 및 투자유지 등 사업화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재활용 산업 사업화 지원예산 총 41억원(105개사)

지원 대상

- 재활용 전 분야* 기업 및 재활용 소재가공** 기업
 - * 폐의류, 폐목재를 활용한 의류, 패션잡화, 가구 제조기업,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생활용품 의류 제조기업, 유기성 폐기물 활용하여 식음료, 가축용 사료 제조기업 등
 - ** 재활용 제품의 원재료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대량 수거·생산·가공하거나 재생원료·재활용 제품 등을 가공·생산하는 재활용·자원순환 기업

지원 내용

- 재활용 기업
 - 기업 매출규모 및 성장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지원
 - ※ 지원기업 수는 기업별 예산 활용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분야	지원규모		지원요건
도약	12개사	기업별 최대 1억원	· 업력 2년 이상의 재활용 기업 · 2021년 매출액 3억 이상 사업화 기반을 갖춘 기업
성장	40개사	기업별 최대 3천만원	· 상용화된 재활용 제품 보유한 기업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재활용 기업
도전	40개사	기업별 최대 1천만원	· 재활용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非재활용기업 및 예비창업자 포함)

- (지원내용) 제품 혁신 및 제품군 확대를 위한 시제품 제작, 대량 생산을 위한 제작 체계 개선, 소재·제품의 품질·성능·환경성 관련 인·검증 취득, 홍보·마케팅 및 판로 확대 비용 등

- 재활용 소재 기업

대상	지원규모		지원요건
재활용 소재기업	13개사	기업별 최대 1억원	· 재활용 기업의 소재가 되는 재생원료 및 재활용 제품 등을 가공·생산하는 재활용·자원순환 기업 · 재활용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타 재활용 기업에게 소재공급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소재 가공 및 공급체계 효율화, 소재 검증용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소재 품질·성능·환경성 관련 인·검증 취득, 신규소재 발굴, 소재공급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판로 확대 비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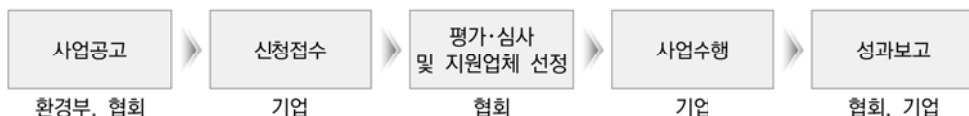
신청·접수

- 공고기간: '22. 2월
- 신청방법: 재활용 종합포털 홈페이지(www.upcycleus.kr)에서 지원공고 확인 후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 재무제표, 4대보험 납입 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정보수집 동의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11, 6712
- 한국환경산업협회 재활용육성팀 ☎ 02-6933-9516, 9517, 9518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창업 및 성장지원

2-6.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창업, 사업모델개발·운영, 자립경영 등 제반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12억원(25개사)

지원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지역공동체 등)
 - * 예비·인정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 참여제한
 - ▷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지원받은 기업 등

지원 내용

- 지원규모: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분야	지원규모	
사회적기업	10개사	기업별 최대 7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	10개사	기업별 최대 4.5천만원
예비창업자	5개사	기업별 최대 1천만원

- 지원분야: 창업, 사업모델 개발·운영,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시장진출, 브랜딩 및 홍보개선 등),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비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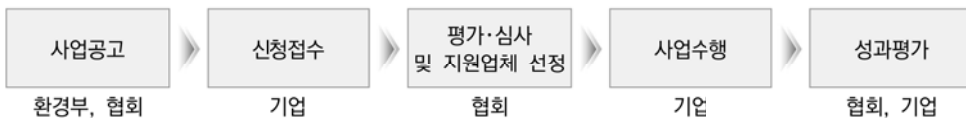
신청·접수

- 공고기간: 매년 2~3월(필요 시 연장 및 추가 공고)
-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 에서 공고 확인 후, 지원사업 관리 홈페이지(www.ge100.kr)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처리 절차



※ 세부내용 : 모집공고 참조

문의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044-201-6688, 6689
-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획조정팀 ☎ 02-6933-9225

친환경 제조공장 선도 모델 구축확산

2-7.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사용 저감 및 생산 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설비개선 비용을 통합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총 60,600백만원

지원 대상

-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60개소 내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정부지원금 기준)
 - ※ (중소) 정부지원금 60%, 민간부담금 40%, (중견) 정부지원금 50%, 민간부담금 50%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
- 지원내용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설비의 설치·개선 자금 지원
 - * 컨설팅 비용은 자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 가능
- 지원분야
 - ① 오염물질 저감, ② 자원순환, ③ 온실가스 저감, ④ 에너지 절감(생산 공정외), ⑤ 스마트시설(생산 공정외), ⑥ 악취 저감, ⑦ 소음·진동 저감, ⑧ 기타 친환경설비
 -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중 3개 이상 선택 신청)

신청·접수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C동 2층)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 자세한 사항은 '22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2, 6704
-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 032-590-4804, 4833

환경신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2-8. 환경신기술 현장조사 및 검증수수료 지원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을 대상으로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및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현장평가비용인 검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환경신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 규모

- 316백만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기술)

지원 내용

- (신기술인증)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서류심사(1차 심사)의 현장조사방법 심의 결과에 따른 시험·분석 비용의 70% 이내 금액(단,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
- (기술검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3조제4항 [별표7],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평가수수료 및 측정분석비(검증수수료)를 합산한 총액의 70% 이내 금액
- 지원비용 산정기준
 -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기술인·검증을 신청한 경우, 총액을 신청 업체수로 나눈 부담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
 - ▷ 정부로부터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비용을 지원받는 기술의 경우, 정부 지원금(중앙·지방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환경신기술인증·검증 지원금을 합하여 70%를 초과할 수 없음
 - ▷ 신청자 측의 사유로 중도 취하한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 반납

지원 시기

- (신기술인증) 신기술인증 2차 심사 완료 후, 지원대상자가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 비용을 납부한 증빙자료와 함께 지원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지급
- (기술검증) 지원대상자가 기술검증 현장평가 협약을 체결한 후 평가 수수료와 측정분석비를 납부한 증빙자료와 함께 검증수수료 지원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당해 연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30일을 경과하더라도 차후 년도에 지급 가능

신청·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 서류

- 환경신기술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지원신청서 혹은 환경기술 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신청서 1부

문의처

-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044-201-667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 02-2284-1643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투자 지원

2-9.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연료전환, 공정설비 교체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탄소중립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총 979억원(민간보조 904억원, 지자체 보조 75억원)

사업 개요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연료전환, 공정설비 교체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탄소중립설비* 지원(국고 50~70%)

* ①저탄소 청정연료 전환(100억원), ②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879억원) : 중소중견기업·지자체(779억원), 상생프로그램(100억원)

※ (추진근거) 「배출권거래법」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에 따라 '15년부터 시행

사업 유형 및 신청 자격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 할당대상업체(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LNG, 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설비전환 비용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

사업명	지원대상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유연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할당대상업체 중 지자체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는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민간기업이 대상이며, 부사업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하되 비할당대상업체까지 포함

※ 기업 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대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
- 기타기업 :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중견·대기업을 제외한 기업
- 지자체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사업선정일 ~ 협약종료일
- 지원예산 : 904억원(민간보조), 75억원(지자체 보조)
- 지원설비 : 사업 운영지침의 [부록1] 지원설비
 -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 지원설비목록의 연료전환설비
 -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지원설비목록의 감축설비로서 투자회수기간 3년 이상의 설비
 -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지원설비목록의 감축설비로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지침」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등의 적용이 가능한 감축설비
- ※ 유의사항 : 지원 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함(사업장에서 사용한 최근 2년 이내의 전력량, 열사용량 등 증빙자료 제출)
- 지원금액 :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50~70% 이내
 -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원) : 50%
 -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704억원) :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
 - * 지원한도 :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100억원) : 50%
 - * 지원한도 :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 ※ 지원금액은 총 지원예산 규모 및 신청업체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범위 : 해당 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지원

▷ 제외 항목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시설 철거비 등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 비용은 보조금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22년 사업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단위: 개별 사업장의 설비군 별로 각각 작성, 단 보조금은 사업장 단위로 지급

▷ (민간기업)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공지사항 참조('22.1.7 기 공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홈페이지(이나라도움)의 "공모현황 찾기"란에서 공고사항 참조

▷ (지자체)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 관련' 공문 참조('22년 1월)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2.1.7.(금) ~ 2022.7.29.(금) 18:00, 상시 접수
- 사업 선정 일정(예정, 신청 물량 등에 따라 선정 통보일 변동 가능)

구분	접수기간	선정 통보일
1회차	'22.1.7.(금) ~ '22.1.21.(금)	3월 1주차
2회차	'22.1.24.(월) ~ '22.3.11.(금)	4월 3주차
3회차	'22.3.14.(월) ~ '22.4.22.(금)	5월 3주차
4회차	'22.4.25.(월) ~ '22.5.27.(금)	6월 4주차
5회차	'22.5.30.(월) ~ '22.7.1.(금)	8월 1주차
6회차	'22.7.4.(월) ~ '22.7.29.(금)	8월 5주차

※ 신청업체가 지원사업 신청서를 신청기간 동안 e나라도움에 접수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회차별로 사업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기타 사정으로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해당 회차별 '지원예산액'은 직전 회차의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나라도움(www.gosims.go.kr) 사업신청 절차

-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 ⑥ 아래의 해당하는 공모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별지 서식 등) 파일 첨부 → [신청서제출] 클릭
- 2022년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해당회차 공고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2022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해당회차 공고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2022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해당회차 공고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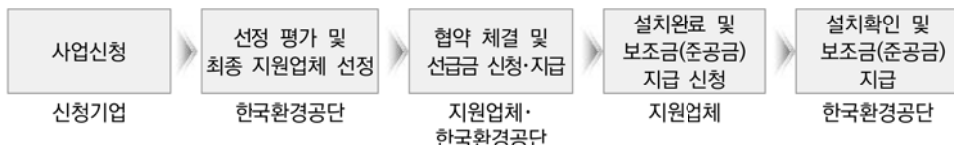
제출 서류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총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식(지침 별지 제4-1, 4-2, 4-3호 서식) 및 첨부서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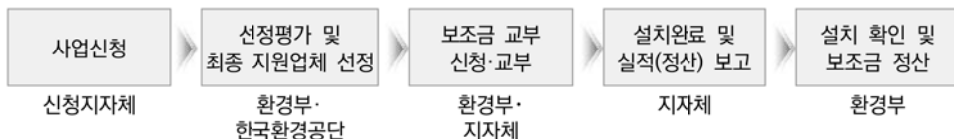
※ 관련 서식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 (중소·중견기업)



- (지 자 체)



문의처

-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96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 032-590-5616~8

《 지원설비 목록 》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1. 탄소무배출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무배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2.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등
3. 폐기물 열분해시설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4. 탄소포집설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5. 연료 전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으로 지원
6. 전처리장치	원료 등의 전처리로 후단 공정의 에너지소비량을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 파쇄기, 선별기 등
7. 인버터 및 인버터 제어형전동기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또는 인버터 제어형 전동기로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인버터 제어형 공기압축기 등
8. 고효율 기기	기존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LED조명, 모터, Pump, Fan, 교반기, 변압기, 고효율 버너 등
9. 불소가스 저감설비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10. 공정개선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로 1~9번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11. 에너지관리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 ※ 다른 감축설비와 병행 설치할 경우 지원 가능
12. 기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 설비 또는 열 생산 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감축결과보고서 제출시 전기 발전량, 구매량, 판매량 등 증빙자료 제출)

온실가스 감축 설비설치 지원으로 목표 달성 유도

2-10.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목표관리제도에 참여 중인 관리업체에 자발적·효율적 목표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 설비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총 30억원(보조금 15억원, 약 230개사)

지원 대상

- 감축 목표를 부여받은 중소·중견 관리업체(또는 사업장)

지원 내용

- 무상지원 방식의 보조금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한도 제한 없이 지원(총사업비에서 정부 50%, 업체 50% 각각 부담)
- 지원범위는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로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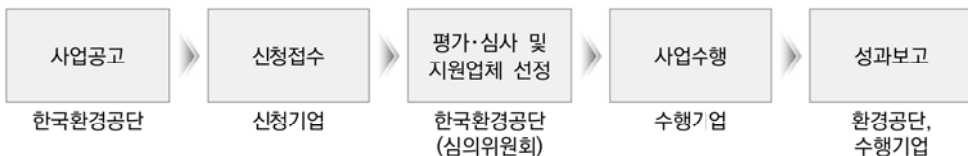
신청·접수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 게시(2월 중순, 15일 이상)
-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 후 관련 서류를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한국 환경공단에 제출

제출 서류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정보활용 동의서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부 ☎ 032-590-5217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통한 협력기회 확대

2-11. 개발도상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국내 기업들의 현지진출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 및 협력채널 구축을 위해 주요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24억원('22년 캄보디아, 필리핀)

지원 대상

- 환경산업체 등
 - ※ 지원 제외 대상(수행기업 선정 시에만 해당함)
 - ▷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 후 1년 미만 기업
 - * 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 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 최근 3년 이내 해외진출지원사업 외 정부지원을 받은 사업 등에서 의무불이행 또는 참여제한 중인 기업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평가 시 감점사항으로 반영
 - ▷ 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 향후 지침 개정 및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 내용

-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비 지원(프로젝트 당 약 6~9억원)
 - ※ 사업 대상국가, 지역 및 범위에 따라 상이

처리 절차

- (대상사업)



- (수행기업)



신청·접수

- (대상사업) 수시접수

* n-2년도 마스터플랜 대상사업 모집

- (수행기업) 매년 1~2월 경(4주이내)

환경원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마감기한 내 제출서류 방문 제출

* 수행기업 공고는 대상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10, 044-201-6709, 671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 02-2284-1752, 1761, 1762

환경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타당성 조사 지원

2-12.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우리 환경기업의 해외사업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환경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의 현지 적응가능성 등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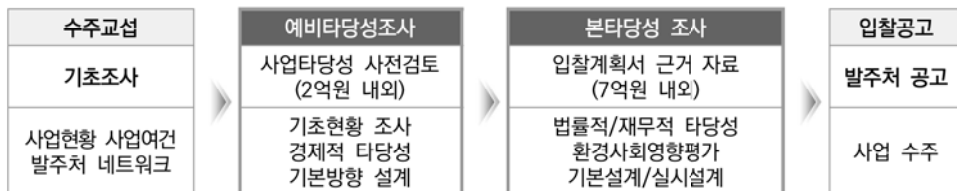
- 51억원

지원 대상

- 환경산업체 등
 - ※ 지원 제외 대상
 -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신청기업인 경우(신청기업)
 - ▷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체납 중인 경우
 - ▷ 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제안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 그 밖에 사업 공고 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 * 향후 지침 개정 및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 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2억원 내외, 본 타당성조사 7억원 내외의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중견/중소+대기업 60%)



* 정부간 협의에 의한 지정공모의 경우 전액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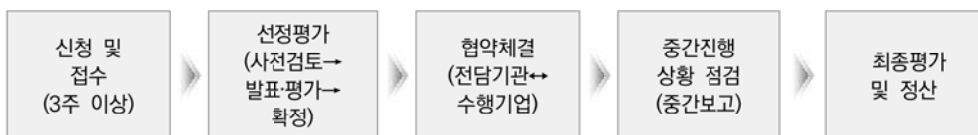
공고·접수

- 매년 1~2월 경(정기, 4주이내), 필요시 상시공고
- 본타당성조사 상시접수 가능
 -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발생 등 필요시 상시 공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공지사항에서 공고를 확인 후, 공고기간 내 제출서류(신청서, 제안서 등) 방문 접수

신청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제안서(소정양식) 10부 (USB 1매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신용등급 확인서 사본,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예비타당성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보고서 사본, 그밖에 필요한 서류 등
 - * 자세한 내용 공고 확인 및 신청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10, 044-201-6709, 671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 02-2284-1756, 1766

국내 우수 환경기술의 해외진출 지원

2-13.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국내 우수 환경기술을 해외 현지 여건과 환경규제에 맞도록 현지 기관(기업, 연구소) 등과 함께 변형·개조하고 이를 실증화 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38.27억 원

지원 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 주관사업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다만,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는 제외
 - ▷ 은행금융거래 불량자 및 세금납부 불이행자
 - ▷ 신청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 * 향후 지침 개정 및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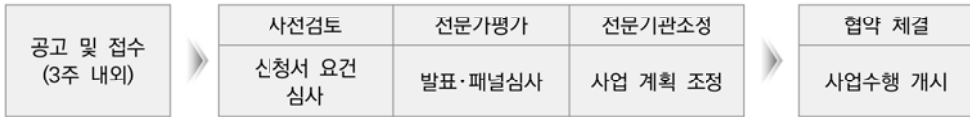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국가별 환경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
 - ※ 대기질관리, 물관리, 폐기물관리·자원순환, 토양·지하수복원·관리, 측정분석장비·장치, 소음·진동관리, 친환경 소재·제품, 생태계 복원/관리, 위해성평가/관리, 환경보건, 환경예측/감시/평가, 친환경공정, 청정생산/설비
- 지원대상국 : 제한없음
- 지원내용 : 단계별(1, 2단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1년 이내 지원

단계	지원내용	지원금액
1단계	기술 해외 실증을 위한 현지 조사, 시제품 설계/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	최대 2억원
2단계	시제품 운송 및 시제품 현지설치, 운전, 검증, 기술 사업화 관련 비용	최대 1억원

※ 1·2단계 택일하여 신청하며 2년 연속하여 동일한 단계 신청 불가

처리 절차



공고·접수

- 공고 시기 : 연간 1회(1~2월) ※ 신규과제 지원 잔액 발생시, 2차과제 추가 모집 공고
-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로그인 후, 좌측의 메뉴 [사업신청-신청계획서 입력/조회]로 들어가 우측 상단의 신규과제신청 클릭
※ 사업신청시 참여연구원, 위탁기관 사업책임자는 반드시 사전에 과학기술인 등록 (<http://ecoplus.keiti.re.kr>) 필요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9, 671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02-2284-1776, 1777

Tip

- ✓ 필수사항 : 진출대상국 현지 기관이 위탁기관으로 반드시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자유공모 과제는 현지 위탁기관과의 MOU 제출 필수
- ✓ 선정평가 포인트
 -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사업추진 전략 및 체계
 - 상대국 위탁기관의 목표 및 수행능력(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 추진 계획 등)
 - 현지사업화 가능성(현지수요 및 시장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후속사업 파급효과)
 - 사업수행능력(책임자의 수행관리능력,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사업비 설정 및 집행(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사업비 계상 및 집행의 합리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강소기업 육성

2-14.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 과정에 필요한 특허·인증 취득, 제품홍보 및 마케팅,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 기술실적 확보 등의 제반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50억원

지원 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신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수출기반 마련 의지와 역량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 지원규모: 수출규모에 따라 단계별 지원

분야	지원규모		지원요건
수출초보	15개사	최대 1억원	·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액 1억원 미만 중소기업
수출안정	8개사	최대 2억원	·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액 1억원~1억 미만 중소기업
수출고도화	7개사	최대 2억원	·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액 1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2회 참여 가능하며, 동일단계 1회 이상 참여 불가 (예) '21년 수출초보 단계 → '23년 수출안정 단계 지원사업 수행

- 지원분야: 마케팅(홍보자료 구축 등), 컨설팅, 인프라 구축(시제품 제작, 인증 취득 등) 등 수출 관련 제반비용
 - ▷ 해외 특허·인증 및 기술 성적서 취득
 - ▷ 전시회, 기술설명회 참가제품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행
 - ▷ 해외 바이어 초청 및 방문을 통한 목표국 네트워크 구축
 - ▷ 기술성능 평가를 위한 시제품제작 및 홍보용 데모 구축
 - ▷ 상기 활동에 필요한 분야별 수출 전문 컨설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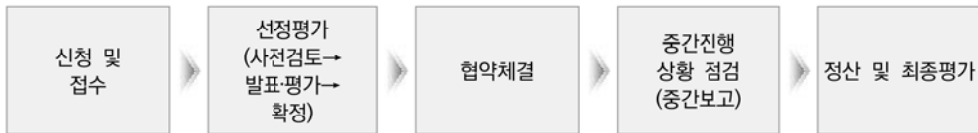
신청·접수

- 공고기간: 매년 1~2월 공고(필요 시 연장 및 추가 공고)
-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 에서 공고 확인 후, 지원사업 관리 홈페이지(www.ge100.kr)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 확인서, 신용등급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년도 수출실적증빙서류, 가점사항 증빙서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가점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9, 6710
- 한국환경산업협회 해외사업지원팀 ☎ 02-6933-9228, 9519

궁금해요!

Q 지원 내용 중, 하나의 분야(예 : 제품홍보 및 마케팅)만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지원금은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자가진단 과정에서 도출된 기업의 홍보 역점 분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원받은 사업비 활용계획을 정해진 세목내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나, 일부 세목은 총 사업비의 30~40%내에서 활용 가능하며, 지나친 편중이나 사업 연관성이 부족한 활용계획은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MDB 협력사업을 통한 MDB 사업 수주를 확대

2-15. 다자개발은행 환경프로젝트 수주지원 사업

MDB 재원 지원 가능성이 큰 개도국 친환경·저탄소 프로젝트 발굴,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를 제고합니다.

지원 규모

- 15억원

지원 대상

- 환경산업체 등
 - ※ 지원 제외대상
 -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 세금납부 불이행자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 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
 - * 향후 지침 개정 및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 내용

- 기술원과 MDB 공동으로 발굴한 기후·환경분야 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원 (프로젝트당 4억원 내외)
- MDB 환경프로젝트 발주처 네트워킹 지원 (온·오프라인 워크숍 및 세미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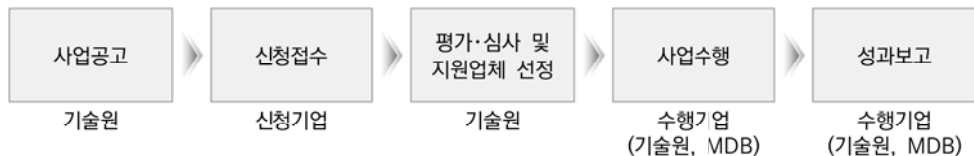
신청·접수

- (수행기관) 매년 1~2월 경(4주이내)
환경원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마감기한 내 제출서류 방문 제출

제출 서류

- 사업제안서, 발표자료 및 증빙자료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9, 671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 02-2284-1757, 1758

해외벤더등록부터 수주지원까지 소단계 지원사업

2-16.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글로벌 기업 벤더등록 및 사업 수주 지원을 통해 해외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10억 원(12개사 내외)

지원 대상

- 중소·중견 환경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 국가개발사업에서 해약, 중단, 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사업자등록증 기준)
- ▷ 국제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자(지원기업 전체에 해당)
- ▷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 * 향후 지침 개정 및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국내 환경기업들의 전략적 해외진출 및 사업수주를 위해 해외 공공 및 민간부문 벤더등록 지원 및 프로젝트 입찰 참여 지원

지원내용	주요내용
벤더등록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벤더등록 관련 시설구축 비용 등 - 현지 특허 출원·취득비, 인증획득, 기술 및 법률 검토 관련비용 등
입찰참여 및 계약체결 지원	-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위한 관련 자료 조사, 통번역비, 전문가 활용비 등
참여 우대	- 환경부 해외진출사업 참여 우대

- (지원분야) 환경분야 및 정부정책에 따른 환경산업 유관분야
- (지원조건) 기업 당 최대 7천만 원 내외, 1년 이내 지원
 - * 정부지원금 80%, 민간부담금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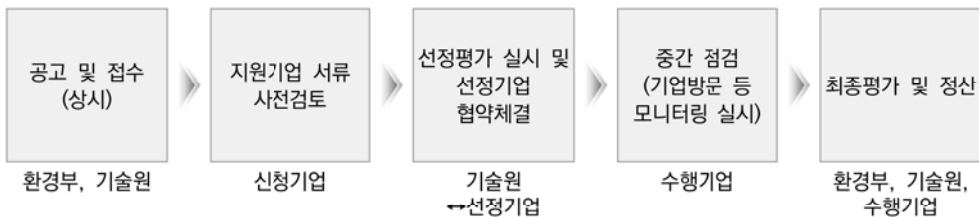
공고·접수

- 매년 1~2월경 공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공지사항 내 공고 확인 후, 제출서류 접수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납입 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정보수집 동의서, 실적증명서 등
-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공지사항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9, 671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02-2284-1775, 1786

국제기후기금 활용 개도국 기후환경 시장 진출 지원

2-17. 녹색기후기금(GCF) 활용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

빠르게 성장하는 국제기후기금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 및 기관이 개도국 GCF 사업 등에 참여하도록 사업개발 초기단계부터 핵심 이해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기구 수준에 부합하는 사업제안서·부속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연간 3-4개 사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당 최대 5억원 지원)
 - ※ 민간투자사업의 본사업개발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신청금액의 20% 현물 혹은 현금 매칭 필수

지원 대상

-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사업 개발에 관심있는 국내 기업 및 기관
 - ※ GCF(Green Climate Fund) :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
 - ※ 온실가스 저감 : ①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보급 ② 건물, 도시, 산업 에너지 절약 ③ 에너지 절약형 녹색교통 ④ 산림 및 토지 이용
 - ※ 기후변화 적응 : ① 기후취약 지역주민 지원 ② 기후적응 인프라 개발 ③ 식수, 보건, 식량 확보 ④ 생태계 보전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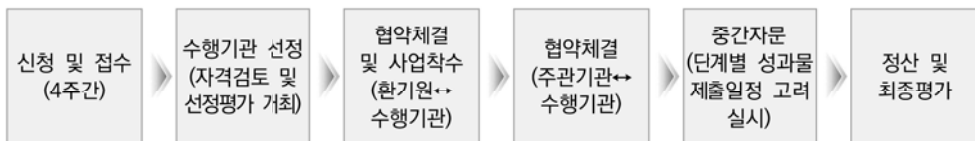
- GCF 사업제안서 개발에 필요한 제안서 및 부속서류 작성 지원

구 분	세부구분	지원금액
초기사업개발	Readiness 요청서 작성	5천만원 이내
	PPF 요청서 작성	5천만원 이내
	컨셉노트 작성	1억원 이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1억원 이내
본사업개발	사업제안서 작성	2억원 이내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3억원 이내
	부속서류 작성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2억원 이내

신청 요령

- 연간 1~2회 자유 및 지정 공모를 통해 신청서 접수
 - ※ 자유공모 : GCF 사업 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발굴한 사업 공모
 - ※ 지정공모 : 환경부 및 환기원에서 GCF 인증기구 및 해외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유망사업 발굴 후 사업개발 수행기관 공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공고를 확인 후, 공고기간 내 제안서, 필요 제출서류 접수
 - ※ 공고기간 : 약 4주

지원 절차



문의처

- 환경부 국제협력과 ☎ 044-201-6568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 ☎ 02-2284-1608

개도국 맞춤형 환경기술 보급 지원 사업

2-18.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및 지원사업

수혜국 지역주민들의 경제, 사회 여건에 맞는 맞춤형 환경기술 보급 지원을 통해 한국형 적정기술 전파 및 환경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22년 신규과제 8억원
 - ▷ '21년 지원현황 : 8.3억원(신규과제 : 5개)

지원 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수혜국 설치 및 보급 경험이 있으며, 유지관리 교육 및 주민인식 개선 등 현지지역량강화 노하우가 있는 단일 기관(업) 또는 공동 컨소시엄

지원 내용

- 한국형 적정기술 전파와 수혜국 보건·환경 개선이 가능한 개도국 수요에 맞는 환경 특화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 (환경적정기술) 낙후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기술로 해당 지역의 환경, 경제, 사회 여건에 맞는 기술
 - (분야) 물, 정수, 폐기물, 보건·위생, 생태환경,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 등
 - ▷ 세부내용은 공고문 확인

공고·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2.2월 ~ 3월
 - * 공고 및 접수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공지사항 내 공고 확인 후, 제출서류 접수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02-2284-1782

시설 및 기술 지원을 통한 자원순환목표 달성

2-19.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자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실시하여 성과관리 제도의 안정적 자원순환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규모

- 50개소(전체 예산 5,000백만원)
-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기업 당 1억원 한도

지원 대상

-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사업장(건설폐기물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분야 및 내용)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시설 및 기술지원

지원 분야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자원순환 시설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국내 사업장에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등 시설·설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100백원(50개소)
자원순환 기술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 사업자를 명시하여 신청	- 폐기물 재활용기술·설비 관련 공동 연구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신청여건에 따라 총 지원 금액 내 분야별 지원기업 수는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접수

- '21년 12월~'22년 2월 공고, 신청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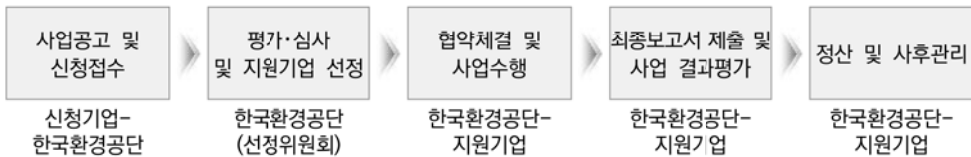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관 1층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신청서에 명기된 구비서류, 그 밖에 신청 관련 증빙자료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53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 032-590-5071

혁신제품 공공조달 연계 지원

2-20.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R&D)사업 및 탄소중립 기여가 가능한 혁신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계약을 연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 및 탄소중립 기여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로 초기 시장 진입 지원

추진근거

- 「조달사업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재부 훈령('21.12)
- 「(환경부)혁신제품 지정 지침」 환경부 예규('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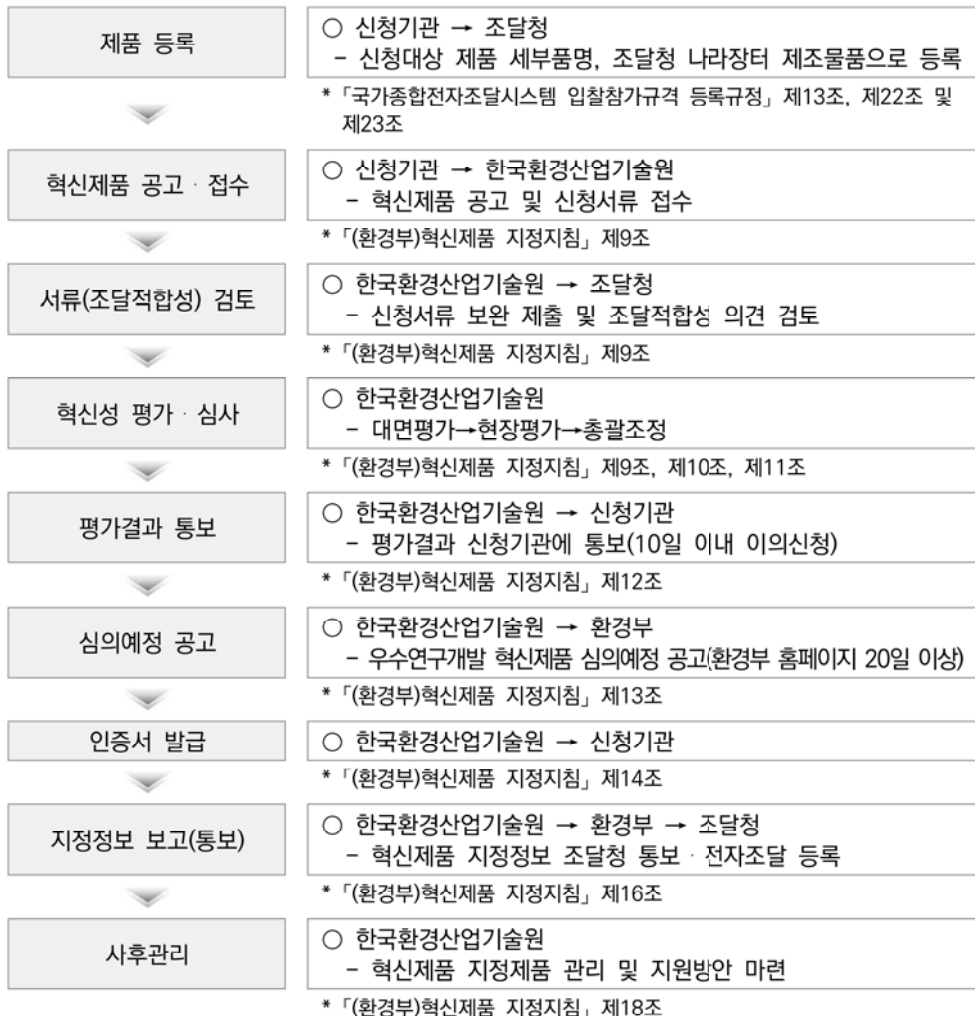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어느 하나 충족하는 제품
 - (패스트트랙 I)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 (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였거나,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 신청 가능
 - (패스트트랙 III)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조달청장에게 추천한 혁신성 인정 제품 또는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혁신성 인정 제품]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탄소중립 정책에 연계 가능한 탄소저감 제품

지원 내용

-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및 탄소저감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

처리 절차



제출 서류

-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지정지침’ 별지 1]
-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 증빙자료(공동연구 또는 기술이전 사업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서 등 증빙자료)
- 혁신제품 설명서
- 제품 규격서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지정지침’ 별지 4] 및 자기점검표, 법정의무인증자료
- 제품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 통과 등) 이행 증빙 자료
- 기술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자료

평가 절차

- (평가위원회 구성) 신청제품의 기술별 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혁신성 평가
 - (평가기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30점), 정책 부합성 및 시장 파급효과(30점), 혁신성(40점)
 - (현장평가) 예비인정된 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현장 확인
 - (총괄조정) 기술의 혁신성 인정, 현장평가 통과한 제품에 대해 종합평가를 통한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위한 최종 의결
- * 별도의 평가수수료 없음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 02-2284-1622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

2-2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기환경개선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용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1,126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만을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 조건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함

지원 내용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 입상상 및 가스상물질 2.7억원, RTO 등 5.6억원, 공동방지시설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0	2,970	1,650	1,320
	200㎥/분	4,700	4,230	2,350	1,880
	300㎥/분	6,300	5,670	3,150	2,520
	400㎥/분	7,500	6,750	3,750	3,000
	500㎥/분	8,000	7,200	4,000	3,200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200	1,080	600	480
	200㎥/분	2,300	2,070	1,150	920
	300㎥/분	3,000	2,700	1,500	1,200
	400㎥/분	3,800	3,420	1,900	1,520
	500㎥/분	4,100	3,690	2,050	1,640
흡수에 의한 시설	먼 지 용	100㎥/분	3,500	3,150	1,750
		200㎥/분	4,600	4,140	2,300
		300㎥/분	6,100	5,490	3,050
		400㎥/분	7,400	6,660	3,700
		500㎥/분	8,400	7,560	4,200
	가 스 용	100㎥/분	3,800	3,420	1,900
		200㎥/분	5,000	4,500	2,500
		300㎥/분	6,700	6,030	3,350
		400㎥/분	7,900	7,110	3,950
		500㎥/분	9,000	8,100	4,5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분	1,600	1,440	800	640
	200㎥/분	2,900	2,610	1,450	1,160
	300㎥/분	3,500	3,150	1,750	1,400
	400㎥/분	4,400	3,960	2,200	1,760
	500㎥/분	5,000	4,500	2,500	2,000
RTO	100㎥/분	14,500	13,050	7,250	5,800
	200㎥/분	20,200	18,180	10,100	8,080
	300㎥/분	31,600	28,440	15,800	12,640
	400㎥/분	35,700	32,130	17,850	14,280
	500㎥/분	38,300	34,470	19,150	15,320
RCO	100㎥/분	21,600	19,440	10,800	8,640
	200㎥/분	31,700	28,530	15,850	12,680
	300㎥/분	48,000	43,200	24,000	19,200
	400㎥/분	55,200	49,680	27,600	22,080
	500㎥/분	61,800	55,620	30,900	24,720
SCR	100㎥/분	24,300	21,870	12,150	9,720
	200㎥/분	28,600	25,740	14,300	11,440
	300㎥/분	33,200	29,880	16,600	13,280
	400㎥/분	37,200	33,480	18,600	14,880
	500㎥/분	40,700	36,630	20,350	16,280

구 분	시설용량	방지사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380천원	1,104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2,412천원	1,929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3,274천원	2,62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3,703천원	2,962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4,007천원	3,206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4,247천원	3,398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5,268천원	4,214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5,623천원	4,499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6,198천원	4,959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6,560천원	5,248천원
전기집진시설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7,051천원	5,641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7,813천원	6,251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8,448천원	6,758천원
	100㎥/분	19,100	17,190	9,550	7,640
	200㎥/분	28,300	25,470	14,150	11,32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300㎥/분	39,900	35,910	19,950	15,960
	400㎥/분	49,500	44,550	24,750	19,800
	500㎥/분	60,500	54,450	30,250	24,200
	100㎥/분	6,000	5,400	3,000	2,400
	200㎥/분	8,900	8,010	4,450	3,560
기타시설	300㎥/분	11,500	10,350	5,750	4,600
	400㎥/분	14,100	12,690	7,050	5,640
	500㎥/분	15,900	14,310	7,950	6,360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 1usRT는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사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방지사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RTO 등의 방지사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사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 분	계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단가 (부가세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계*		IoT 게이트웨이	VPN	계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흡착설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원심력집진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흡수·세정	410	pH계 100	50	30	30	160	40	369	205	164
전기집진	340	전류계 30	50	30	30	160	40	306	170	136
RT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RC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SCR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기타시설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 ID팬(유입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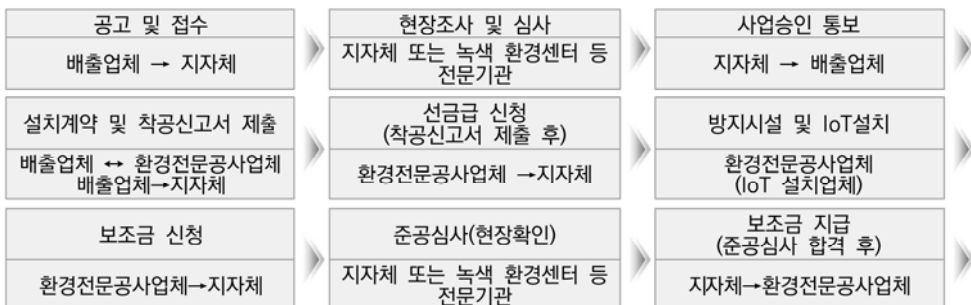
신청·접수

- 지원대상자가 해당 지자체에 신청

제출 서류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자가측정자료, 방지시설 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서약서 등 구비서류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6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

2-22.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

대기환경개선 및 영세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6억원

지원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지역 내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운영(영업행위)하는 자 중 유증기 회수설비를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

적용시설	설치기한	지원대상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 이상	'22.04.02	지원 제외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2,000㎥	'22.12.31.	지원 제외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1,000㎥	'23.12.31.	1년 조기 설치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 미만*	-	1년 이상 조기 설치

*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 비고 제11호에 따른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대상(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 초과), ② 300㎥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판매량 증대를 예상하여 회수설비를 사전에 설치하고자 하는 주유소에 적용

지원 조건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준에 적합한 회수설비(회수용 진공펌프, 대기밸브, 회수밸브 등)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 및 노즐, 유증기 회수 아답터 및 제어 관련 장치, 대기밸브와 회수밸브를 비롯한 각종 안전 밸브류,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장비(토목·배관공사비 제외)

※ 보조금 지원 금액은 주유기 형식별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근거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이 지원한도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설치비용을 지원

〈 보조금 조기설치 설치비 지원을 〉

조기설치 년수	연간판매량 300~1,000m³		
	지원율	국비	지방비
1년	40%	25%	15%

〈 주유기 형식별 보조금 산정기준 〉

구 분	지원구분	지원한도	보조율(%)			보조금 지원단가 (주유시설 노즐당)
			총계	국고	지방비	
개별식 (스탠드형)	1년 조기설치	640만원	40	25	15	80만원
개별식 (천장형)	1년 조기설치	800만원	40	25	15	100만원
집중식	1년 조기설치	400만원	40	25	15	400만원

신청·접수

- 지원대상자 또는 회수설비 제작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제출 서류

-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 설치 주유소 사업자 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 2018년 이후 휘발유 연간판매량 자료
- 공사계약서 및 세부내역서
-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 및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 설비투자 유도

2-23.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 사업

대기환경개선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신규 설치·노후설비 교체 비용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19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중인 기업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3

지원 내용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정도검사비, 유지관리비 일부 지원(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지원 방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승인된 금액 내에서 지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 세부절차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 참고

신청·접수

- 지원대상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9

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
인천	대기보전과	032-440-3503
경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031-8008-8233
부산	기후대기과	051-888-3585
대구	기후대기과	053-803-5276
광주	환경정책과	062-613-4153
대전	미세먼지대응과	042-270-5693
세종	환경정책과	044-300-4243
울산	환경보전과	052-229-3185
충북	기후대기과	043-220-4346
충남	환경보전과	041-635-4447
전북	환경보전과	063-280-4534
전남	환경관리과	061-286-7162
경북	환경안전과	054-880-3555
경남	기후대기과	055-211-6676
제주	생활환경과	064-710-4112

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2-24.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중질유 사용시설을 청정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26.5억원(86개 시설)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으로 보일러, 건조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의 사용연료가 중질유인 시설

지원 내용

- 사업장의 중질유 사용시설을 청정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기배출시스템 교체
 - 벙커C유, 부생연료유, 정제연료유 등 → LPG, LNG, 전기

종류	주요시설	세부내용
가스 시설	저녹스버너 부착 공사	· 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둘러, 수분배기 등 포함하여 저녹스 버너 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0 내에서 지원 ※ 가스법령 등에서 버너만 교체 불가능한 경우 보일러 포함
	LPG 저장탱크 설치공사	· 토목공사(1톤이상 철근 배근작업), 기화기 및 방폭 전기공사, 메쉬 헨스, 공업용 경보기, 소화기 등 안전시설 포함 ※ 저장탱크 재질은 SPV355 등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공사	· 터파기 및 포장공사, 이상압력 통보장치, 밸브, 맨홀 등 ※ 배관 재질은 PE PIPE 등
	옥외(노출)배관 등 기타공사	· 밸브, 계량기, 경보기, 보정기, 공업용 차단기, 전기공사 등 ※ 배관 재질은 SPPG PIPE(KSD-3631) 등
전기 시설	전원설비 공사	· 수전·변전설비공사[큐비클(전기 기기, 수전·변전 설비 등을 둘러싼 구조물) 설치공사 포함]
	전원공급 설비공사	· 배전반, 분전반, 전력간선, 분기선 및 버관(덕트 및 트레이 포함) 등의 설비공사
	기타공사	· 그 밖에 연료전환시설에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 3~5종 규모 배출시설은 1개소당 사업비 50백만원 이내, 1~2종 규모는 100백만원 이내에서 90%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현장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증액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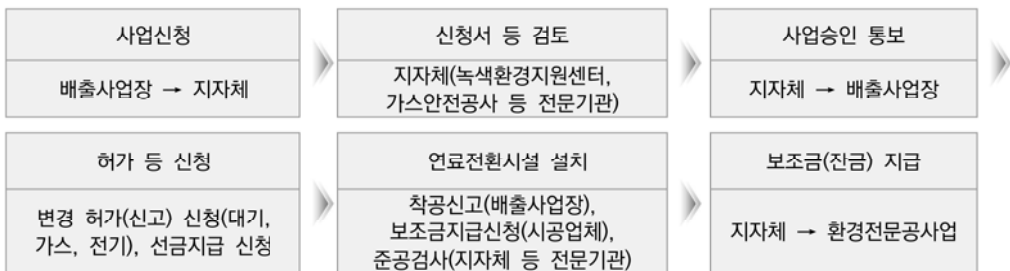
신청·접수

- 교체를 원하는 지원대상자가 해당 지자체에 신청

제출 서류

-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신청서
- 개선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 기록부 사본
- 저녹스버너 부착 신청서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3

물산업 우수제품등의 우선구매 제도

2-25.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지원사업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국내 물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우수제품 또는 기술을 지정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 매년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계획’에 따라 공고된 대상품목
 - 밸브, 수도미터, 펌프, 수처리설비, 수도용 강 이형관, 수도용 주철 이형관, 비상발전기, 터보송풍기, 수도용 내충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등 총 9품목
 - ‘22년 신규 품목 추가 예정(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교반기)
 - ※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이며,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 가능
 - 매년 사용자인 지자체·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하여 대상품목 확대 예정

지원 대상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물관리기술 또는 물산업에 적용되는 제품이나 기술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물산업 기술발전 협의회에서 선정한 품목
 - ※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물산업 우수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와 K-water의 ‘물산업 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SEMS)’ 품목 포함
- 평가심사를 통해 물산업 기자재 등의 제조 및 생산 능력이 우수함을 확인한 업체의 제품·기술
 - ※ 단, 신용상 문제가 있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물산업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촉진
- 지정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한 수요자 설명회 개최 및 기술·제품 홍보
- 지명경쟁 입찰,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구매방법에 따른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에 반영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매년 15% 이상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시스템에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등록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라 '물산업 우수제품'은 신인도 평가 가점(1점) 부여
- 「상하수도 설계기준」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지침」에 '물산업 우수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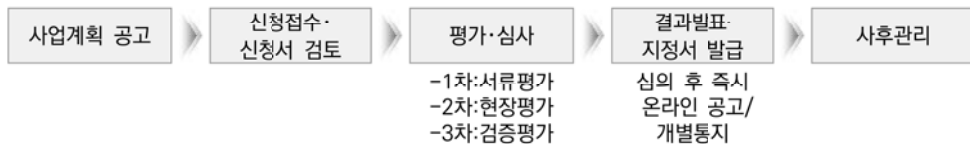
신청·접수

-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watis.or.kr) 공지사항 공고문을 확인하여 지정신청서를 우편 접수
 - * 기업 담당자에게 공고 및 접수 시점을 알림 메일로 안내

제출 서류

-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및 제반서류
 - 우수제품 설명서
 - 분야별(제작규격 및 안전성, 공급안전성,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평가 서류

처리 절차



* 상기 행사일정과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044-201-7637
- 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인증팀 ☎ 02-3156-7791

2-26.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물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해 R&D, 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규모

- '22년 총 750백만원 내외(10개사, 기업별 매년 75백만원 내외, 5년간 지원)

지원 대상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 중 아래의 세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물기업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 3% 이상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을 받은 부품 등 보유

지원 내용

- 혁신기술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구분	지원내용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개별지원)	기업 현황진단 및 R&D전략 설계 지원
	연구시설 개선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규격화 제작지원
혁신기술해외진출 (개별지원)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지원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판로개척 (공동지원)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지원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

※ 당해년도 예산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75백만원/년 지원

신청·접수

- (공고 및 신청 기진) '22년 3월 중 공고 및 '22.3~4월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메일(innowater@kwp.or.kr)로 접수

제출 서류

- 아래 서류를 신청기간내 제출

* 추후 사업 공고 시 제출서류 서식 첨부 및 제출방법 공지 예정

1. 신청서_기업명	5-3. 국세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2. 사업현황 설명 자료_기업명	5-4. 재무재표('19&'20년)
3. 수출실적 집계표_기업명	5-5. 인증서(국외)
3-1. 증명서	5-7. 지식재산권
4.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_기업명	5-6. 고용보험명부
5. 제출서류_기업명	6. 가점 서류_기업명
5-1. 사업자등록증, 5-2. 중소기업확인서	6-1. NET
5-2. 법인등기부등본	6-2. 기타
5-3. 국세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7. 발표자료

처리 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한국물산업협의회(온·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
사전검토	한국물산업협의회(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	평가(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지정심의	물산업기술심사단 지정심의(10개사) ※지정통보(5.7)
지정서 교부	환경부(10개사)
성과평가	전년도 실적에 대한 정기평가(년 1회)

문의처

-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044-201-7637
- 한국물산업협의회 ☎ 02-2634-6784

물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2-27. 물산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물산업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술 개발 및 육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제도 구분 및 지원현황

구분	제 도 명		지원실적	연도	지원내용
전략 지원	기술예고제		90개 품목	'14년~	수요기반 기술예고품목 사전예고
공동 기술 개발	구매 조건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32건	'13년~	과제규모 최대 3년, 30.4억원 이내 (성공 시 수익계약 3년 자격 부여)
		구매연계형 신제품개발	47건	'08년~	과제규모 최대 2년, 7.7억원 이내 (성공 시 수익계약 3년 자격 부여)
	성과공유제		130건	'08년~	성과검증 및 판로지원 (성공 시 수익계약 2년 자격 부여)
기술 육성	테스트베드 (기술성능확인 포함)		143건	'18년~	성능검증 및 적용실적 확보 지원
판로 지원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9개 품목 87개사	'20년~	지명경쟁자격 부여 및 등록품목 구매 (舊 K-water 물산업 기자재 공급자 등록제도)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20건	'21년~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확보 및 성능검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132억	'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발급을 통한 초기 판로지원
사업화 · 성장 지원	K-water 등록기술		407건	'09년~	기술사용협약 체결 및 홍보 지원
	우수기술 운영확인		43건	'18년~	기술홍보 및 판로확대 지원 (舊 K-water Global Partner 인증브랜드)
	기술이전		582건	'99년~	지식재산권 이전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지원사업		5건	'20년~	임금피크제 활용, 전문인력 지원
	글로벌 혁신성장 지원사업		114개사	'21년~	국내·외 기술 및 시장정보 조사, 사업화 컨설팅 지원
	혁신기술 성능검증 컨설팅 지원사업		8건	'21~	기술개발과제 성능검증 목표 적정성 등 컨설팅 지원(KTL)

지원 대상

- 제도별 지원 조건에 만족 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물산업 관련 중소기업 모두 지원가능

지원 내용

- 기술예고제
 - 제도개요 : 물산업 수요자가 필요한 기술을 사전에 공지하여 공급자(중소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가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를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공을 강화하는 제도
 - 대상품목 : K-water 경영·기술전력 분야와 연계한 4개 분야, 90개 품목



구 분	합계	물안심 (수자원)	물나눔 (수도)	물융합 (신재생E· 물순환)	물혁신 (안전·기술 혁신)
기술예고품목	90	27	48	11	4

- 테스트베드(기술성능확인)
 - 제도개요 : K-water가 운영·관리 중인 시설을 기업에 테스트베드로 개방하여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성능검증 및 적용실적 확보 지원
 - 기술성능확인 참여기술의 경우 K-water의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물기업의 기술성능확인 시행
 - 참여대상 : 수자원, 수도, 물에너지 등 물산업 전분야 기업

《K-water 시설현황(121개소)》

현장 사업장(111개소)		연구인프라(10개소)	
다목적댐(20) * 홍수조절용댐 및 조절지(5) 포함	소양강댐, 안동댐 등 15,903.6백만㎥	상수도 실증플랜트	비만관유량계 교정시스템
생공용수댐(14) * 낙동강하굿둑(1) 포함	광동댐, 문운댐 등 683.4백만㎥	하수도 실증플랜트	수질분석연구센터
광역상수도(35) * 공업용수도(13) 포함	일산, 구미광역 등 17,709.4천㎥/일	유량계 교정시스템	원심모형시험기
지방상수도(23)	양주, 정읍 등 1,459천㎥/일	수위계 교정시스템	대형지반시험 장치시스템
		우량계 교정시스템	수력발전성능시험센터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동투자형·구매연계형)

- 제도개요 : 구매·투자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신제품 또는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
- 법적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지원유형 : 자유응모(기업제안), 지정공모(K-water 사내직원제안)

* 지원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시행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구분	과제규모	지원 규모		
공동투자형 (구매의무X)	최대 3년, 30.4억원 이내 추진가능	정 부	총개발비의 39.4% 이내 (현금)	12억
		중소기업	총개발비의 21.2% 이상	6.4억
			- 현금 : 총개발비의 12.7%	3.9억
			- 현물 : 총개발비의 8.5%	2.5억
		K-water	총개발비의 39.4% 이내 (현금)	12억
구매연계형 (구매의무O)	최대 2년, 7.7억원 이내 추진가능	정 부	총개발비의 65% 이내 (현금)	5억
		중소기업	총개발비의 15% 이상	1.2억
			- 현금 : 총개발비의 9%	0.7억
			- 현물 : 총개발비의 6%	0.5억
		K-water	총개발비의 20% 이상	1.5억
			- 현금 : 총개발비의 12%	0.9억
			- 현물 : 총개발비의 8%	0.6억

- 성과공유제

- 제도개요 : K-water와 중소기업 간 공동의 혁신활동으로 기자재의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상호공유
- 지원내용 : 현장 Test-bed 제공 및 성과공유제품 판로확보(수의계약 2년)
- 과제유형 : 원가절감형 및 품질개선형

- K-water 등록기술 제도

- 제도개요 : 정부인증 신기술(NET) 중 K-water 적용성이 높은 신기술을 선별하여 채택·등록함으로써 정부의 신기술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물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 ('22년부터 특허공법 포함)
- 지원내용 : 일괄기술사용협약체결, 사내홍보, 설계반영 시 우선 심사 등 우대
- 지원대상 : 심사 접수시작일 기준으로 잔여 보호(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신기술 중 K-water 사업 적용성이 높은 신기술

- K-water 우수기술 운영확인제도

- 제도개요 : K-water 시설에서 일정기간 이상 적용된 기술(제품)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절차를 거친 우수기술에 대한 운영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술(제품)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
- 지원내용 : 운영확인서 제공 및 기술소개 브로슈어 발간 등을 통해 우수기술(제품)을 홍보, 국제 물행사 공동참여 및 국외 물관련 기관과 기술로드쇼 진행
- 운영확인서 유형

구분	내용
	BEST-tech (Best Technology) : K-water의 시설에서 5년 이상 적용된 안정화 단계의 기술 중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기술(제품)
	NEW-tech (New Technology) : K-water의 시설에서 2년 이상 적용된 초기단계의 기술 중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기술(제품)

- 기술이전

- 지원내용 : 특허 등 K-water 지식재산권을 이전하여 사업화 Seed 제공 및 사업화 지원
- 협약사항 : 기술료, 협약기간, 실시권의 형태 등
- 지원내용 : 기술료 수익을 활용한 기술이전기업 성능인증비용 지원 및 국제 발명전시회 출품 등 사업화 유망기술의 해외판로 개척

- 전문인력 지원사업

- 제도개요 : 정부 중소기업 지원제도 참여기업과 임금피크제도를 활용한 전문인력 1:1 매칭(1:1 또는 1:多)을 통해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기업 - 인력 간 적합성 확인을 위해 2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1단계) 전문인력 활용, 기술개발 등 사업화 자문(출장 또는 파견 최소 3개월↑)
 - * 참여 전문인력은 컨설팅비 지원 제외, 그 외 경비(출장비 등)만 지원
 - (2단계) 상호 동의하에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최대 12개월)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완료 단계까지 연구원으로 활용(소속 공공기관 퇴직 전제)
 - *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2개월간 상생격려금 지원(48백만원/기업당 한도)

공고·접수

※ 지원제도별 공고를 확인하여 필요 서류 구비 후 신청·접수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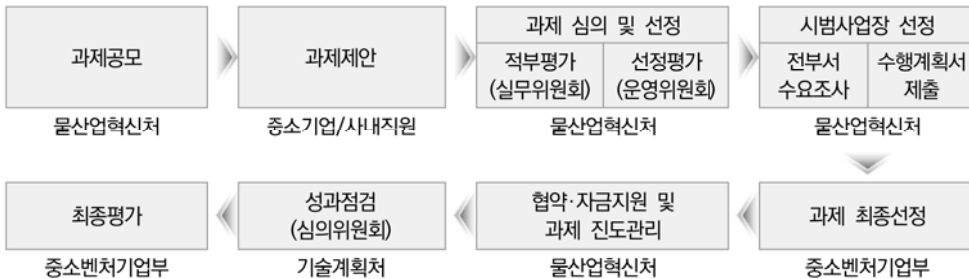
- K-water 물산업플랫폼시스템(<http://www.kwater.or.kr/wis>)

처리 절차

- 테스트베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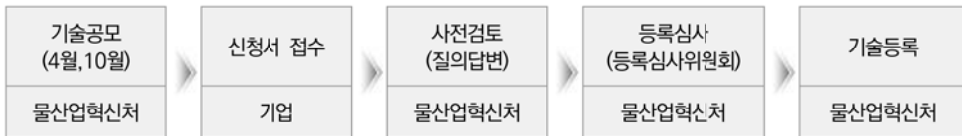
- 구매연계형·공동투자형 신제품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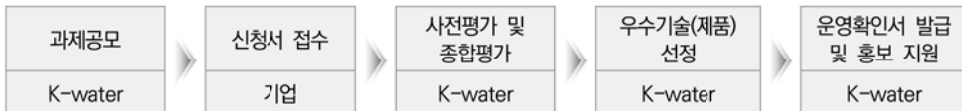
• 성과공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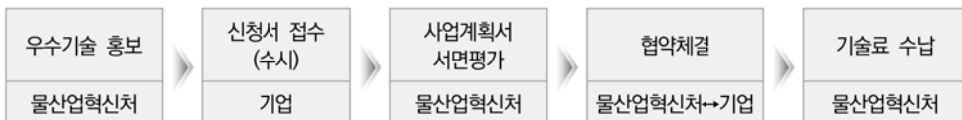
• K-water 등록기술 제도



• K-water 우수기술 운영확인제도



• 기술이전



- 전문인력 지원사업

① 참여기업 공모	② 기업선정 평가	③ 전문인력 공모	④ 전문인력 매칭	⑤ 협약체결	⑥ 자문시행 (1단계)	⑦ 고용전환 (2단계)
-----------------	--------------	-----------------	-----------------	-----------	--------------------	--------------------

문 의 처

- K-water 물산업혁신처 물산업기술부 ☎ 042-629-2531~38
분산형실증센터추진부 ☎ 042-629-2517 (테스트베드)

협력 중소기업의 운영·자금난 해소

2-28. 중소기업 금융 지원 사업

금융기관과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협력 중소기업의 운영·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규모

- 250억 (K-water 100억, 금융기관 15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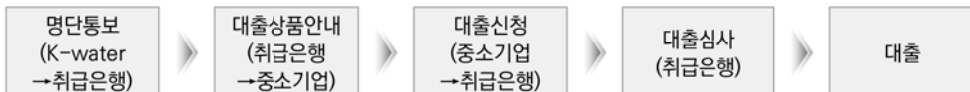
지원 대상

- 최근 K-water 기자재 납품기업
- K-water 중소기업 지원제도* 참여 업체
 - * 성과공유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기술이전사업
- K-water 협력 스타트업
- K-water 해외 시장개척단 등

지원 내용

- 대출기간 : 1년(연장 가능)
- 대출한도 : 7억원/1개사
- 우대금리 : 0.80%p 금리혜택 (기업 신용도에 따라 1.4%p 추가감면)

처리 절차



문의처

- K-water 물산업혁신처 물기업협력부 ☎ 042-629-2541~2

물산업 디지털화 전환 지원

2-29.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

물기술제품 스마트 기능 탑재를 위한 기술개발, 업그레이드, 국산화 등 물산업 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강소 물기업을 육성합니다.

지원 규모

- '22년 12억원(6개사)

지원 대상

- 물기술제품의 스마트 기능 탑재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화 및 사업화 지원
- 모집대상

ICT 융합 디지털 기술제품	능동형 스마트 기술제품	솔루션-운영 시스템	탄소·에너지 절감 기술제품
• 기계식 제품과 융합하여 디지털 기능 구현이 가능한 기술 • 최소 2개 이상 기술제품 ICT 융합으로 기능 구현 • 제어, 데이터 보완 기능 필수	• 제품 자체 스마트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TM/TC제외) • 기계, 계측기 등 제어가 필요한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내장 프로세서 장착	• 빅데이터 자동 수집, 시스템 모델링 등 • AI기반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한 최적 운영기준 도출	• 스마트 기능을 활용한 탄소·에너지 절감 기능 구현 • 약품비 등 기타 유지관리비 절감

- 지원자격
 - 물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학계, 연구계, 대기업 등 최대 3개사 공동 참여 가능

- 지원제한
 - (중복지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 지원을 받은 제품
 - (외국기술의 사업화) 외국 기술제품의 국내 조립 후 실증 사업화
 - 특허, 지식재산권, 법적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제품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기술제품당 최대 2억원 최장 3년간 지원
 -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실증화, 사업화 비용의 최대 80% 이내(인건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외)
 - 참여주체별 지원금 차등 지원(중소기업 80%, 학계연구계 70%, 그 외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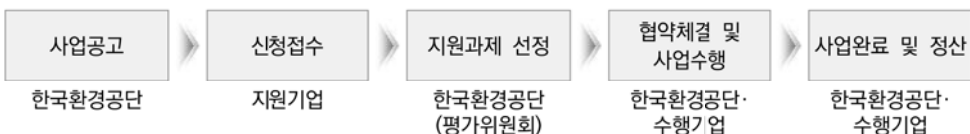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 1. 1.(토) ~ 2. 4.(금) 18:00
 - ※ 2022. 2. 4.(금) 18:00 이후 접수된 사업신청 건은 무효 처리
- 제출방법 : 온라인(watercluster@keco.or.kr)로 제출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누리집(www.watercluster.or.kr) 작성서식 참조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 기타 첨부서류
 - ※ 자세한 사항은 '22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물융합연구부 ☎ 053-601-6116, 6117

물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화 지원

2-30. 해외수출형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유망 물관리기술 보유 물기업중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현지 기술평가 및 테스트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해외진출·수출을 촉진합니다.

지원 규모

- '22년 3억원 (1~3개사 선정)

지원 대상

- 현지수요처 보유 및 사업화 추진전략이 구체화 된 과제
 - 해외 현지기관과의 각종 계약 및 업무협약 체결, 관련 의향서 보유 등
- 지원자격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기업
 - 대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과 공동참여 가능
- 지원자격 제한
 - 동일 과제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서 현지 해외 사업화 및 실증화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기업
 - 특허, 지식재산권, 법적 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

지원 내용

- 해외수출을 위한 기술평가 등 실증화 비용 최대 50% 지원
 - Pilot Plant 제작, 해외 현지 운반비 및 설치비, 현지 시운전 및 실험분석 비용, 기술평가 수수료 등 소요 경비 지원(인건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외)

- 참여주체별 지원금 차등 지원

참여주체	지원비율	비고
중소기업	50%	대기업, 학계·연구계는 중소, 중견기업과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중견기업	45%	
대기업	30%	
학계 및 연구기관	40%	

- 클러스터 전문인력, 실험분석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현지실증 지원, 컨설팅 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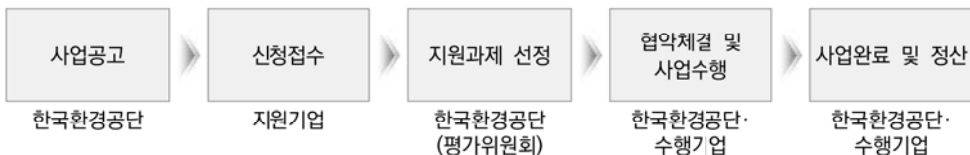
신청·접수

- 공고 예정일 : 2월 중
- 제출 방법 : 온라인(watercluster@keco.or.kr) 제출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누리집(www.watercluster.or.kr) 작성서식 참조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 기타 첨부서류
- ※ 자세한 사항은 '22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물융합연구부 ☎ 053-601-6113, 6115

탄소중립 혁신 물기술제품 발굴 및 지원

2-31. 수요기반 탄소중립 물기술 실증 지원사업

물산업 분야 탄소저감 기술제품의 수요기반 실증화를 통한 사업화 지원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합니다.

지원 규모

- 9.23억원 (3개사)

지원 대상

-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저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물기술제품
- 모집대상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고효율·저에너지
• 하폐수 바이오가스화 • 통합(하폐수+음식물+축분) 바이오가스화 • 소수력 (하폐수처리장, 정수처리장, 농업용저수지) 발전 등 • 하폐수열 회수 및 기타 에너지전환기술	• 물산업 적용 온실가스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 • 물산업적용 물리·화학·생물학적 온실가스 발생저감 공정	• 전력비 및 연료비 절감 •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적 운영 시스템 • 약품비 및 기타 운영비용 절감 등

- 제외대상
 - (중복지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 지원을 받은 제품
 - (외국기술의 사업화) 외국 기술제품의 국내 조립 후 실증 사업화
 - 특허, 지식재산권, 법적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제품
- 지원자격
 - 물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공동참여 시 주관기관 참여율은 50% 이상으로 하고 주관기관 포함 최대 3개사(기관)까지 참여 가능하며, 공동기관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기술제품당 최대 3억원 최장 3년간 지원
 - 기술개발, 실증화, 사업화 비용의 최대 80% 이내
 - 지원제외 : 인건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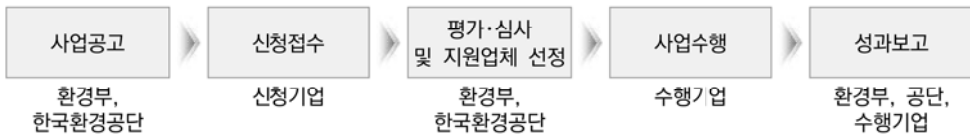
신청·접수

- 공고 예정일 : 2월 중
- 제출 방법 : 온라인(watercluster@keco.or.kr) 제출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누리집(www.watercluster.or.kr) 작성서식 참조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 기타 첨부서류
 - * 자세한 사항은 '22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물융합연구부 ☎ 053-601-6112, 6117

탄소중립 물기술 사업화지원

2-32. K-뉴딜 물기업 성장지원 프로젝트랩

산·학·연이 공간적으로 통합된 프로젝트랩을 구성하여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고용연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6억원(4개사)

지원 대상

- 컨소시엄 구성 (기업 참여는 필수)
 - (1) 주관기관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참여한 경우, 공동기관으로 기업이 참여
 - (2)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참여한 경우, 공동기관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참여
- 컨소시엄 자격
 - 기 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 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내용

- (지원분야) 제어계측, 물소재부품, 수처리공법, 물에너지융합, 상·하수관로
 -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과제수행비 지원

구 분	내용
자유공모	공모분야에 해당되는 과제를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하는 과제

- (참여혜택) 연구인력 역량강화교육 무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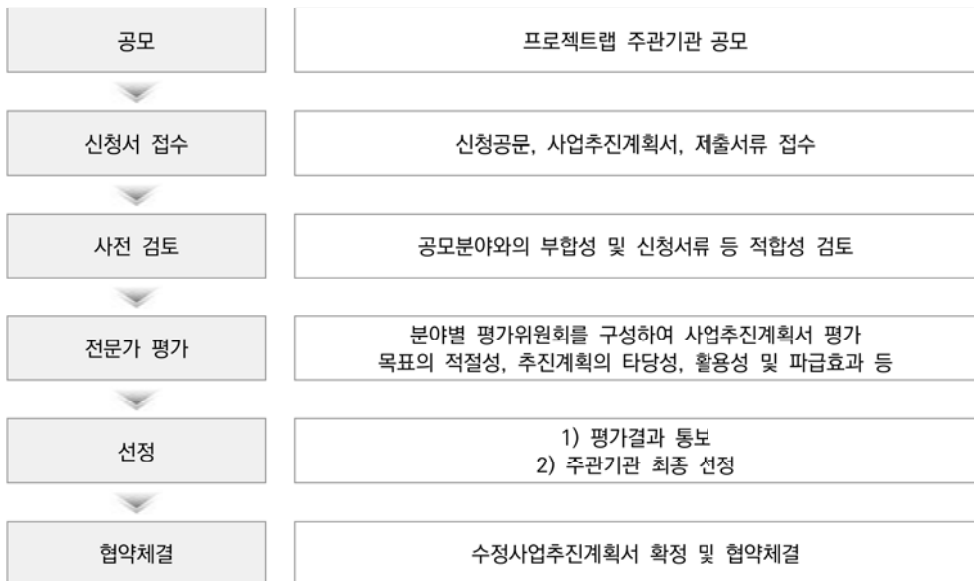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이메일로 신청서 및 신청서류 제출)
 - 이메일 : watercluster@keco.or.kr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 기타 첨부서류
- * 자세한 사항은 '22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 ☎ 053-601-6142

제3장 환경컨설팅



3-1. 환경경영 (ESG) 컨설팅 지원사업	91
3-2. 환경성적 산정 지원 사업	93
3-3.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 서비스	95
3-4.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지원	97
3-5. 해외사무소 운영	99
3-6. 환경산업 해외진출 전문컨설팅 지원	101
3-7.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 및 기술지도	103
3-8.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107
3-9.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기업 기술지원사업	110
3-10.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112
3-11.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기술지원	114
3-12. 생태독성, TOC (총유기탄소) 관리 무상 기술지원	116
3-13.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	120
3-14. 자원순환 성과관리 기술진단·지도	122
3-15.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124
3-16. 개도국 환경시설 진단 및 정책 컨설팅 사업	126

기업별 맞춤형 환경 컨설팅 지원

3-1. 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환경경영 체계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수준 향상 및 녹색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종업계가 모여있는 조합·협회 단위로 업종 및 기업별 맞춤형 환경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100개사 내외
 - 조합·협회 단위의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지원기업 수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

- 조합·협회(주관기관) 및 가입 회원사(참여기업)
 - ▷ (주관기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및 협회
 -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지원 제외대상
 - ▷ 주관기관이 휴면상태, 해산건인, 이사장(회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공석, 세금 체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참여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관리,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기업의 친환경경영실태 및 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주요 환경 이슈를 파악하고 조합·협회 단위 맞춤형 환경 컨설팅 제공
 - ▷ (주관기관) 친환경경영시스템 구축, 환경보고서 발간, 친환경경영 전담인력 양성 교육 등 조합·협회 단위 지원을 통해 참여기업(회원사) 확산 도모
 - ▷ (참여기업) 맞춤형 환경·에너지 단계별 진단·지도 사업을 통하여 자원 및 에너지 생산성 개선, 환경관리 개선
- 참여업종별 단계별 멘토링 실시하여 업종 전체로의 성과 확산

공고·접수

- 매년 상반기 공고 및 접수(연1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공지사항 공고문을 확인하여 지원사업 신청서를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 ‘환경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1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 02-2284-1974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3-2. 환경성적 산정 지원 사업

중소·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위한 인증신청보고서 작성 시 환경성적 산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약 100여개 제품(2022년 지원예산 4억원/예정)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 목적의 정책에 부합하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 지원 제외 대상

▷ 환경성적표지 제외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예. 의류기기 및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

지원 내용

-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컨설팅 비용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환경성적 산정 지원 사업	중소중견기업·사회적기업 등	인증신청을 위한 환경성적 산정 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 환경성적표지 도안사용 지원 사업 연계 지원

신청·접수

- '22.3월 ~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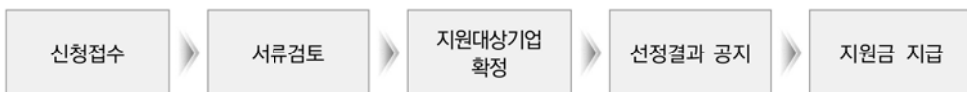
*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www.epd.or.kr)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 및 우편접수

▷ 이메일(sunny@keiti.re.kr) 신청·접수

신청 서류

-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사본
-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보고서 컨설팅 영수증
- 중소·중견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
- 환경법규 위반내역 확인서

처리 절차



※ 세부내용 : 모집공고 참조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1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적인증실 ☎ 02-2284-1575
-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 : www.epd.or.kr

환경표지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 경감

3-3.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 서비스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표지 인증획득 지원 등을 위한 제품 환경성 전문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 시험분석 수수료 최대 7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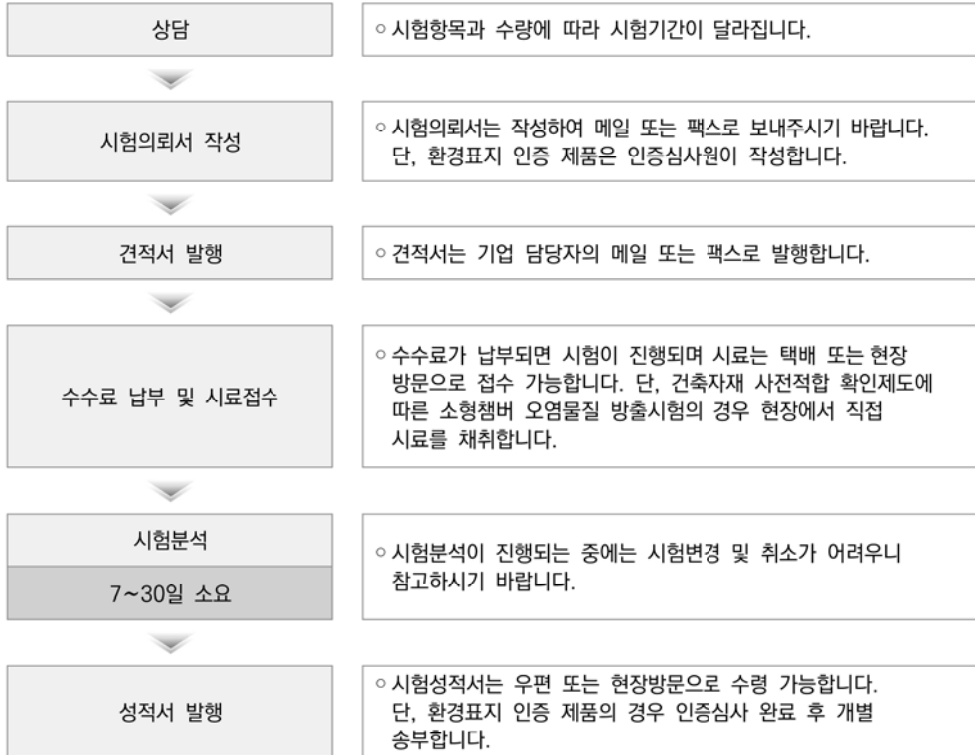
지원 대상

- 환경표지 인증 시험의뢰 기업체
- 건축자재 사전적합 확인검사 신청 기업체(페인트, 벽지 등)
- 자체 품질관리 시험의뢰 기업체
-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입주기업 등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 환경표지 인증 및 자체 품질관리 시험분석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입주기업 시제품 등 시험분석 지원(최대 90% 할인)
 - 기업지원플러스(G4B)를 활용한 위·변조 방지 온라인 시험성적서 발급
- [시험 항목]
 - 소형챔버 오염물질 방출시험(TVOC, Toluene, Formaldehyde)
 - 중금속(Pb, Cd 등)의 함량시험, 용출시험, 노출시험
 - 유기오염물질(프탈레이트 가소제, VOCs 등) 시험
 - 두루마리 화장지, 토너카트리지 품질시험 등
- [기타 사항]
 - 실내 및 기타환경 분야(02.025)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KT801)

지원 절차



신청 방법

- 메일(eacinfo@keiti.re.kr) 또는 방문접수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시험분석실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3층
- TEL : 02-2284-1660, FAX : 02-2284-1661
- 홈페이지 : <http://el.keiti.re.kr/eac/greenInfo.do>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3-4.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지원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 지원과 함께 제도 이행 및 제품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650개사(전체 예산 5.8억원)
 -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 지원(390개사, 2.4억원)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260개사, 3.4억원)
- ※ 단, 지원기업 규모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지원 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3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단, 휴·폐업기업 및 국제·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 시험·검사비 지원(390개사 내외)
 - 제품 당 시험·검사 수수료(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기업 당 최대 150만원 한도
 - ※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지원 한도 차등 적용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260개사 내외)
 -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제도 세부 이행 절차 안내
 - 표시기준 이행 안내(필수 표시사항, 표시·광고제한 문구 등)
 - 제품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 컨설팅(제품 진단·개선,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
 -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대면, 비대면)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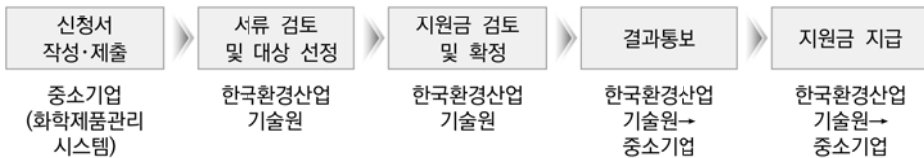
- (모집기간) 2022.3. ~ 2022.4.
 - (신청방법) 온라인
 - (시험·검사비 지원)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모집 공고문 내 제출처 별도 안내)
- ※ 모집기간 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문 게재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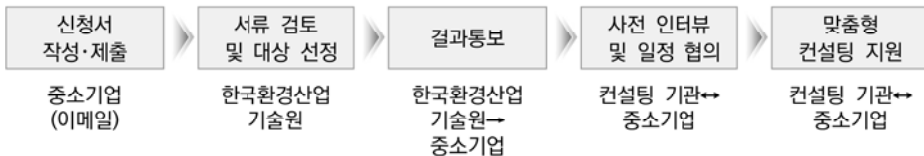
-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등
- ※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제품의 영수증 및 견적서 제출 필요

처리 절차

-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 시험검사비 지원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문의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25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 02-2284-1864, 1835

우리 환경기업의 해외수주 현지 밀착 지원

3-5. 해외사무소 운영

전 세계 수출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국내 환경산업체의 현지 수출활동 밀착지원 및 국가 간 환경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해외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

- 해외사무소 설치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함에 따라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내 환경기업

※ 설치국가(5개국) : 중국(북경),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콜롬비아(보고타), 알제리(알제)

지원 내용

- 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현지 기술정보 수집 및 협력사업 발굴, 동반 수주협상 등 환경사업에 특화된 현지 밀착형 수주지원 서비스 제공

구분	주요업무	세부 업무
중점 추진 업무	협력사업 발굴	국가 간 정책협력, 주요발주처 면담 및 사업발굴
	대외행사 개최	수출지원 및 국가 간 협력행사(국가 간 협력 지원, 포럼, 상담회) *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온택트) 진행
	기업서비스 제공	고객맞춤형 정보조사·뉴스레터 발간 등
		우수기술 현지마케팅 및 수요처 발굴 수주협상지원 및 전문 컨설팅 제공

지원절차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1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02-2284-1774

구분	중국사무소	베트남사무소	인니사무소	콜롬비아사무소	알제리사무소
소재지	북경	하노이	자카르타	보고타	알제
연락처	korea@keiti.re.kr	redpig@keiti.re.kr	ksg@keiti.re.kr	kim3113@keiti.re.kr	conex@keiti.re.kr
	+86-10-8591-0998	+84-24-2220-8210	+62-21-5011-1272	+57-1-696-3227	+213-2169-1986

Tip

- ✓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상세한 자문신청 필요
 -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프로젝트 개요에 대한 상세한 기재를 통해 컨설팅 제공여부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함
- ✓ 추가이슈 발생 시 해외사무소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
 - 발생이슈에 대한 해외사무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에 최적화된 현지밀착 수주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3-6. 환경산업 해외진출 전문컨설팅 지원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시 발생하는 제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무역전문가 및 전문법인의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환경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외진출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환경기업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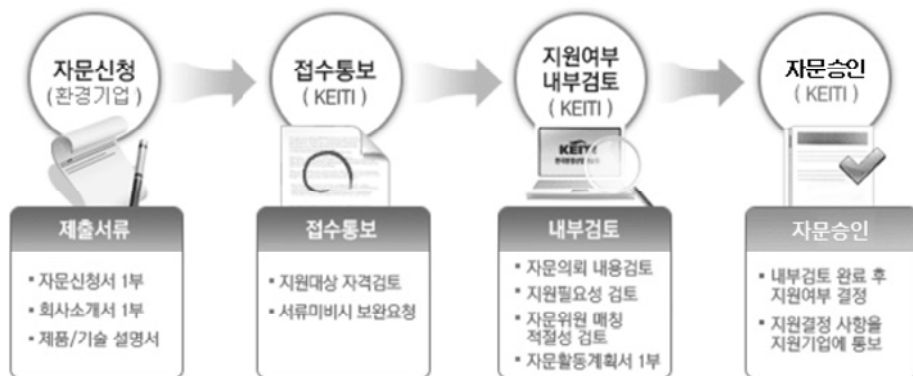
- 수출애로사항 온·오프라인 상담
 - 온라인(www.eishub.or.kr/consulting)·오프라인(현장방문/내원상담)
모든 상담창구 상시 운용을 통한 One -Stop 상담 서비스 제공
- 해외진출자문단을 통한 종합무역컨설팅
 -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무역전반의 애로사항과 문제에 대한 국내외 실무 무역전문가 및 전문법인의 해외진출 컨설팅 서비스 제공

구분	세부내용		
지원단 구성	국내외 무역전문가 79명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관세법인 더블유 다인합농관세사무소
자문 분야	◦ 해외시장개척, 온라인 마케팅, 무역실무 ◦ 계약서검토, 기술 도입·이전 ◦ 외환·무역금융, 해외투자, 국제입찰	◦ 해외진출 관련 기업법무 자문 ◦ 매매·대리점, 독점·플랜트, 비밀유지 계약 등 각종 계약서 검토	◦ 해외진출 관련 FTA 전문 컨설팅 ◦ AEO인증취득, 수출입 리스크관리 등 자문 ◦ 통관·관세·환급

공고·접수

- 해외환경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eishub.or.kr/consulting) 접속
⇒ 회원가입 ⇒ 해외진출 컨설팅 ⇒ 신청하기 클릭
- 상시 접수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02-2284-1778, 1785

Tip

- ✓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상세한 자문신청 필요
 -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프로젝트 개요에 대한 상세한 기재를 통해 컨설팅 제공여부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함
- ✓ 추가이슈 발생 시 내부 컨설턴트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
 - 발생이슈에 대한 내부 컨설턴트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에 최적화된 컨설팅 제공 가능

자원순환산업 창업활성화 및 기술력 제고

3-7.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 및 기술지도

자원순환산업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 자원순환 산업체의 기술력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 : 181백만원
- 자원순환산업 기술지도 : 80백만원

지원 대상

- (창업대행지원) 자원순환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진흥원 등의 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공단과 동일한 지원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직접(셀프)창업지원)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행사와 계약체결하지 않고 직접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는 창업자
- (기술지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자원순환산업 사업자

지원내용

- (창업대행지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지정하는 지원 분야를 대행사가 수행하고 그 성과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창업대행비를 대행사에게 지급
 - ▷ 공단과 자원순환산업 창업대행비 지원약정을 체결하여 등록된 대행사에 한함
- (직접(셀프)창업지원) 예비창업자가 공단과 협약 체결된 대행사 도움 없이 직접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자원순환산업 관련 허가증을 득하였을 경우 창업지원비를 창업자에게 지급
- (기술지도) 자원순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애로기술(공정개선, 환경개선, 시제품 제작)에 대한 지도를 받을 경우 일정 한도 내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

(단위: 만원)

지원 사업	지원분야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한도	
					일반	청년, 장애인, 여성, 북한이 탈주민 창업자
창업 대행	사업 타당성	○ 사업계획의 적합성,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검토 ○ 기타 창업관련 타당성 검토		250	200	220
	사업계획 절차대행	사업계획승인 서류 작성 및 창업 절차대행		625	550	590
	인·허가 절차대행	인·허가 서류작성 및 절차대행	수집·운반업(신고제외)	375	300	330
			수집·운반업 이외 업종	500	450	470
	경영관리	경영, 재무, 생산, 판매 등에 대한 지도	375	300	330	
직접 (셀프) 창업	인·허가 절차	인·허가 절차 직접 수행	수집·운반업(신고제외)	300	220	
			수집·운반업 이외 업종	450	300	

▷ 공단 지원한도는 공급가격 기준이며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신청기업에서 부담(직접(셀프)창업은 해당 없음)

• 자원순환산업 기술지도

(단위: 만원)

지원분야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한도	
			일반 참여기업	청년, 장애인, 여성, 북한 이탈주민 창업자 참여기업 창업자
공정개선	공정시스템, 공정단축 개선	2,500	2,000	2,250
	기존 기성품 구매를 통한 공정개선	2,000	1,600	1,800
환경개선	생산환경 개선	2,000	1,600	1,800
시제품제작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2,000	1,600	1,800

▷ 공단 지원한도는 공급가격 기준이며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신청기업에서 부담

※ 청년창업자란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

※ 장애인창업자란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여성창업자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북한이탈주민 창업자란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자

- 분야별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성능·품질 향상, 생산시간 단축, 비용절감, 불량률 감소 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공정개선지원 ·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매출 신장 및 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 우대 · 지원예시: (종전) ①→②→③→④ ⇨ (개선) ①→②→③ - 부품의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단, ERP등 시스템 구축 제외)
환경개선	- 생산 공정상의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직무기피해소와 관련된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 개발기술의 상용화(상품화 및 품격 향상 등 시장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신청·접수

- 창업지원사업 및 기술지도사업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한국환경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서 신청서 접수

제출 서류

- 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에서 운용요강 및 관련 서식 참조 (공단홈페이지-주요사업-자원순환-자원순환사업-자료실)

처리 절차

1단계 (사업공고)	2단계 (사업신청)	3단계 (지원서 승인)	4단계 (사업착수)
◦ 창업지원 ◦ 기술지도	◦ 지원서 신청	◦ 지원서 검토, 보완, 승인	◦ 분야별 과업수행
5단계 (완료보고)	6단계 (사업비 청구·승인)	7단계 (사업비 지급)	
◦ 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 검토 및 최종승인 ◦ 사업비 지급 청구	◦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	

문의처

구분			전화
본사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		032-590-4113
지역본부 및 지사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부	031-590-0615
		강원지사 자원순환지원부	033-240-9537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부		02-3153-0520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부		051-366-3605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부		053-580-7502
	충청권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부	042-939-2307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부	043-219-6404
	호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부	062-949-0758
		전북지사 자원순환지원부	063-279-0816
		제주지사 자원순환지원부	064-725-6546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악취관리능력 제고

3-8.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배출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악취저감 기술을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의 악취관리능력 제고 및 주변 지역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규모

- 연간 290개 사업장
 - ▷ 악취저감기술 지원 및 사후관리 기술지원(290개소), 악취유발업종 악취관리 교육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및 지자체 요청 사업장, 그 밖의 환경부 요청 사업장,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구 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악취저감 기술 지원	- 자발적인 악취관리가 어려운 사업장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	사업장 악취물질 측정·분석 및 악취저감 방안 제시 (보고서 제공)
악취 유발업종 악취관리 교육	- 생활공간 주변에 위치한 축산시설 등의 생활악취 관계자 -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 등의 주요 악취 유발업종 관계자 등 ※ 지자체 및 학회 등과 연계하여 간담회 형태의 교육 실시	- 업종별 악취관리 방안 교육 - 악취저감기술 및 최신동향 소개 - 악취관리 우수사례 전파 등

※ 지원 제외대상

- ▷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중 대기업 및 중견기업
- ▷ 악취기술진단 대상인 공공환경기초시설

지원 내용

• 악취저감기술 지원

사업장 담당자 상담	- 원료·공정 등 일반현황 파악 - 민원 현황 및 사업장 애로사항 청취
악취배출현황 파악	- 악취배출공정 조사 - 주요 악취발생원 파악
배기시설 점검	- 설계사양 및 운영현황 파악 - 적정 가동여부 점검 및 악취포집현황 조사
악취방지시설 점검	- 설계사양 및 운영현황 파악 - 적정 가동여부 점검 및 악취처리현황 조사
악취물질 측정 분석	시료채취지점 선정 및 악취물질 측정·분석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악취저감 방안 제시	- 문제점 제시 및 악취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안 - 악취기술지원 보고서 사업장 제공

신청·접수

• 매년 수시 접수

- 사업장 : 신청서 작성 후 중소기업 확인서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지자체 : 개별사업장 신청서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취합 후 전자문서(공문서)로 신청

▷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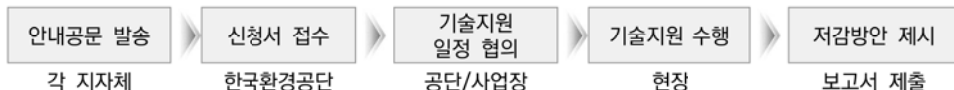
※ 홈페이지 ▶ 주요사업 ▶ 기후대기 ▶ 악취관리 ▶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 서식 다운로드

제출 서류

-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중소기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처리시설 공정도 등

처리 절차

• 악취저감기술 지원



• 악취유발업종 악취관리 교육



문의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1
-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악취기술지원부 ☎ 042-939-2433

궁금해요!

- Q**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무상지원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A** 기술컨설팅 및 측정·분석(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비용 등이 해당되고, 시설 설치와 관련한 금융 지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금융지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제도 활용)
- Q** 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악취저감기술 지원 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장 여건 상 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태인데 꼭 보고서 내용대로 변경해야 하나요?
- A** 보고서에 제시된 측정결과 및 개선방안은 참고자료이며, 사업장에는 어떠한 의무사항도 없습니다. 향후 공정 및 시설을 개선 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 Q**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고 공정과 시설을 일부 개선하였는데, 악취가 얼마나 저감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악취기술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설개선 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개선 사항이 있을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악취저감기술 지원 결과 때문에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 A** 악취저감기술 지원 보고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자료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행정조치를 위한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술지원을 통한 굴뚝TMS의 안정적 운영 도모

3-9.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기업 기술지원사업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사업장의 전송상태 및 측정자료 신뢰성 확인 등 기술지원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의 안정적 운영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 기업('20년말 기준, 826개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시행령 별표3

지원 내용

-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는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 등 기술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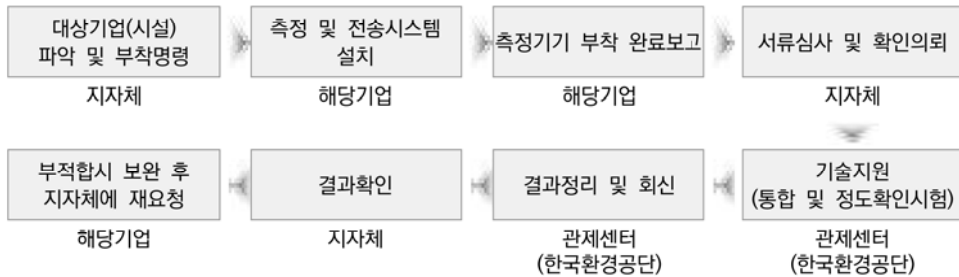
- 측정기기 설치(개선) 완료시 지자체(관할 행정기관)에 신청

제출 서류

- 설치(개선) 완료보고서, 사업장 관리카드, 배출 및 방지시설 공정도, 형식승인 및 각종 성적서 사본 등

처리 절차

• 기술지원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기술부 ☎ 032-590-3659
-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stacknsky.or.kr

→ 용어설명

- ✓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종~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관측·관리하는 기기

* 1종~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1종), 20~80톤(2종), 10~20톤(3종)인 사업장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비산배출 관리제도 성공적 안착 도모

3-10.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15년부터 시행된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에 관련 시설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기술적 컨설팅을 무상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78개 사업장

지원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 대상업종 중,
 - 기술력 부족,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 벤젠 등 인체위해성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기타 공정 특성 상 비산배출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지원 내용

- 비산배출시설 저감제도 안내 및 시설관리기준 이행방법 교육
- 비산배출시설 최적 설치·운영 방안 제시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및 변경 신고서 작성지원
- 최초 및 연간 점검보고서 작성방법 안내
- 비산배출시설(공정배출시설, 비산누출시설 등) 측정지원
- 사업장 주변 HAPs 대기환경농도 모니터링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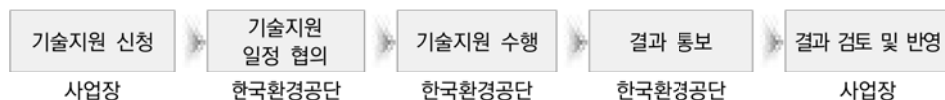
- 이메일(haps@keco.or.kr) 또는 팩스(032-590-3699)로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지원신청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 등
 - ▷ 기술지원 신청서 양식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참조

처리 절차

- 비산배출시설 기술지원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4
-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유해대기부 ☎ 032-590-4693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부적합 개선

3-11.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기술지원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컨설팅을 무상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대상 주유소 185개소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주유소

지원 내용

- 유증기회수설비 비정상 작동 원인파악 및 적정 운영 방법 교육
-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www.vrs.or.kr) 사용 방법 교육
 - ▷ 기술지원 대상 선정 주유소에 대해서 무상으로 기술지원 실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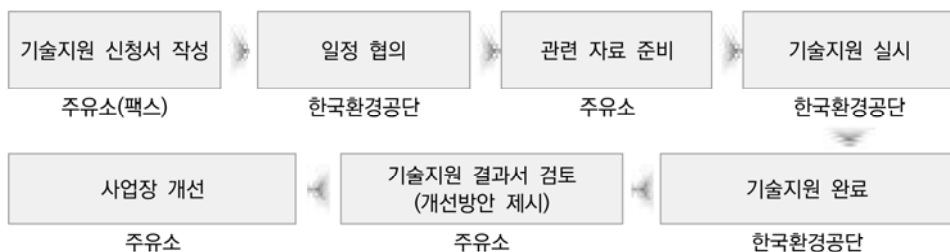
- '20년 1월부터 검사 대상지역 관할 지역본부로 팩스 접수
 - 수도권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유해대기관리부(031-776-5275)
 - 영남권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유해대기관리부(051-366-3660)
 - 호남·충청권 : 전북지사 유해대기관리부(063-279-0859)

제출 서류

- 기술지원 신청서
 - ▷ 기술지원 신청서 양식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참조

기술지원 절차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기술지원 절차



문의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4
-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유해대기부 ☎ 032-590-4676, 4685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환경기술력 강화

3-12. 생태독성, TOC(총유기탄소) 관리 무상 기술지원

생태독성관리제도(2011. 도입),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COD→TOC, 2020.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기술력 제고 및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규모

- (생태독성) 90개소(전체 예산 14.2억원) / (TOC) 100개소(전체 예산 10억원)
 - * 지원 신청은 선착순이며 '22년도 기술지원 신청 마감시 2023년에 지원 가능함.
 - * '21년 지원현황: 생태독성 90개소 TOC 100개소

지원 대상

- 전국 폐수배출시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구 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생태독성	TOC	
폐수배출 시설	◦ 폐수배출시설 82개 전(全) 업종 -간접방류시설 제외	◦ 전(全) 업종	◦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현장조사 ◦ 생태독성·이화학 분석지원 ◦ 생태독성, TOC 저감실험 지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 폐수배출시설의 폐수가 유입되는 500㎡/일 이상 시설	◦ 제한없음	◦ 유입업체 생태독성·이화학 분석 지원 ◦ 단위공정별 생태독성·이화학 분석 지원 ◦ 단위공정별 현장조사
공공폐수 처리시설	◦ 제한 없음	◦ 제한없음	◦ 생태독성, TOC 저감실험 지원

지원 내용

- 생태독성, TOC 원인물질 규명 및 저감을 위한 분석·실험 등 무상 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현장 방문 출장		담당자 문진 및 시설 확인	
분석비용	생태독성	약 150만원/개소	약 370만원/개소
	생태독성 이화학항목 (일반항목 및 기타)	약 220만원/개소	
	TOC 이화학항목	약 120만원/개소	약 120만원/개소
저감실험		응집침전, 활성탄흡착 등	사업장 맞춤형 실험

※ '22년도 기술지원 사업장당 예상소요액, 사업장별 실제 소요비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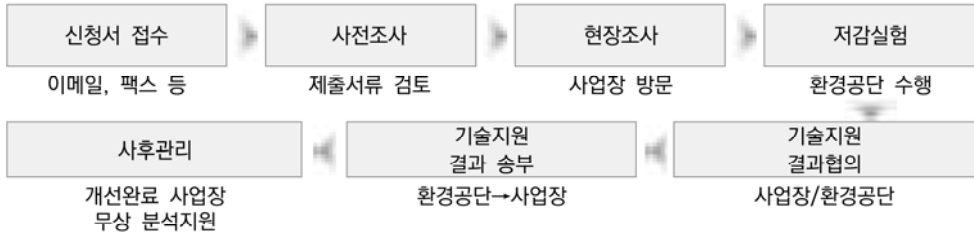
- '22년 1월부터 선착순 접수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 ▷ 메 일 : wetteam@keco.or.kr
 - ▷ 팩 스 : 032-590-3930
 - ▷ 우 편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물환경관리처 생태독성관리부(우. 22689)
☎ 032-590-3989~90

제출 서류

구 분	신 청 양 식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신청서(폐수배출시설) TOC 관리 기술지원 신청서(폐수배출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신청서(공공처리시설) TOC관리 기술지원 신청서(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하단부 “자주 찾는 대국민 서비스(전체보기)” 클릭 후, “생태독성관리 또는 TOC 기술지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는 신청서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201-7073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 032-590-3989~90

→ 생태독성관리제도란?

- ✓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체 중심의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건강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생태독성 관리제도를 도입 및 시행('11.1.)
- ※ 「생태독성관리제도」는 미국, 독일 등에서 1970년대부터 도입·운영 중
- ✓ 생태독성이란?
- ⇒ 방류수에 물벼룩을 넣어 치사 및 유영저해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물벼룩이 영향을 받게 되는 정도를 TU(Toxic Unit, 100/EC50)라는 단위로 표현

→ 총유기탄소(TOC) 관리

- ✓ 유기물질 관리시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
- ※ (신규시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존시설) 공공처리시설 2021.1.1.부터, 폐수배출시설 2022.1.1.부터 시행)
- ✓ 기존 유기물질 관리지표인 COD_{Mn}은 산화율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수역(하천, 호소)에 설정된 TOC 생활환경 기준과 연계한 체계적인 유기물 관리를 위해 점오염원에 대한 TOC 기준을 도입
- ✓ 총유기탄소(TOC)란?
- ⇒ 총유기탄소는 Total Organic Carbon의 약자인 TOC라고 함. 수중에는 총유기탄소와 총무기탄소(TIC 또는 IC, Total Inorganic Carbon으로 표현하며, 탄산염, 중탄산염, 용존 이산화탄소의 합을 말한다)가 함께 공존함. 총유기탄소(TOC)는 총탄소(TC) 중 총무기탄소(TIC)를 제외한 물질을 뜻하며 총유기탄소는 반응성이 있어 수질오염의 척도로 쓰임

궁금해요!

Q 생태독성 시험분석은 어디로 의뢰를 해야 하나요?

A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생태독성관리제도 기술지원을 클릭하여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는 생태독성 분석의뢰기관 현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현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Q 물벼룩의 상태에 따라 생태독성값(TU)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생태독성시험법은 수질오염공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벼룩의 상태에 따라 값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벼룩 생후 24시간 이내의 어린개체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매월 표준독성물질 시험*을 통해 검증된 물벼룩을 사용함으로써 생태독성 결과값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표준독성물질 시험이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독성시험이 정상적인 조건에서 수행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독성물질(다이크롬산포타슘)을 사용하여 24시간 EC50값이 신뢰범위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Q 수질오염물질과 생태독성 값과의 상관관계는 어떤가요?

A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은 생태독성과의 상관관계가 낮지만 부유물질(SS)과 중금속(구리, 아연 등)은 생태독성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3-13.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

공공환경시설과 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지원으로 처리시설의 고장예방과 처리효율 제고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350개 시설
- 기업에서 운영하는 환경시설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

지원 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1조(기술지원 대상시설 등)
-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低減)하려는 시설
-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한 시설
- 방류수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청이 지정한 시설 등

지원 내용

- 생산공정에서의 환경오염 사전예방·저감방안
- 환경시설 운영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 환경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법 지도

구 분	지원 내용
자료검토	지원 요청사항의 문제점 분석을 위한 운영자료 검토
현장 기술지원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장조사
개선방안제시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 제시

신청·접수

- 매년 수시 접수
- 기업환경시설 : 신청서 및 중소기업 자가진단 확인서 작성 후 공단(환경본부)에 제출
- 지방환경관서 및 지자체 : 기술지원대상시설을 전자문서(공문)으로 제출

제출 서류

- 기술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중소기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또는 중소기업 자가진단 확인서),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처리공정도 등

▷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참조

※ 홈페이지 ▶ 주요사업 ▶ 환경시설 ▶ 수생태복원 및 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 자료실

▷ 문의사항 연락처

- 본 사 환경시설본부 물인프라처 수처리진단부(032-590-3966)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내 한국환경공단)
관할구역 : 전국(하수관로 기술진단)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환경진단부(02-3153-0679)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8길82(강서 IT벨리 7층)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환경진단부(051-366-3954)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34
관할구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환경진단부(063-279-1342)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관할구역 :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3-14. 자원순환 성과관리 기술진단·지도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술진단·지도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향상시키고 최종처분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규모

- 10개소(전체 예산 50백만원)

* '21년 지원현황 : 15개소

지원 대상

-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18개 업종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지정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배출사업장(건설폐기물 제외)

기술진단·지도 내용

- 자원순환목표 이행계획의 미이행 또는 순환이용률이 저조한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 미이행 정도, 배출하는 폐기물의 특성,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진단·지도* 실시

*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환경부고시 제2019-53호)

-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 배출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처리실태
- 사업장 소재지 주변 재활용 여건
- 그 밖의 기술진단·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선정·신청접수

- '22년 5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신청서 접수
 - ▷ 자원순환성과관리시스템(www.recycling-infor.or.kr)을 통하여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 ▷ 우편(인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또는 메일(rrp2@keco.or.kr)로 제출

제출 서류

- 기술진단·지도신청서, 기술진단·지도 신청요약서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53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 032-590-5075

중소기업 살생물제 전과정 지원

3-15.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살생물제 승인을 위한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역량 제고를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 및 승인에 필요한 전과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

- 51.7억원(약 300개사, 20여종 물질)
- ※ 단, 지원대상 규모는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변동가능

지원 대상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유예 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기업 중 승인이행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또는 승인평가 살생물물질로 살생물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 미신고 업체, 법령 위반 기업 등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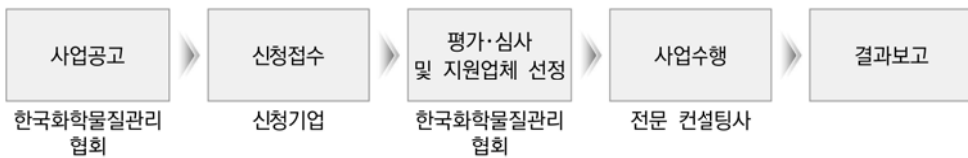
- 중소기업 대상 살생물물질 승인제도 이행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지원유형 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한 전과정 지원
- 살생물제품 생산·수입 중소기업 승인제도 이행기반 마련
 - 살생물제품 생산·수입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살생물제품 효과·효능 시험자료 생산 지원
 - 살생물제품 생산·수입 중소기업 승인자료 생산연계 지원
 -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제출 서류

-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 제출서류 일부 변동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살생물제산업계 지원팀 ☎ 02-6050-1314, 1315

개도국 환경시설 진단 및 정책 컨설팅을 통한 해외 시장수요 발굴

3-16. 개도국 환경시설 진단 및 정책 컨설팅 사업

증가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부문의 개도국 정책·기술 자문 요구에 대응하고 관련부문 국내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업무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연간 3~4개 사업 현지 시설진단 및 컨설팅 조사 지원(사업당 최대 1.3억원 지원)

지원 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 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 ※ 지원 제외대상(수행기업 선정시에만 해당함)
 - ▷ 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 * 최근 3년 이내 해외진출지원사업 외 정부지원을 받은 사업 등에서 의무불이행 또는 참여제한 중인 기업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평가 시 감점사항으로 반영
 - ▷ 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 의무를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 향후 지침 개정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 내용

- 환경시설 진단 및 정책 컨설팅 사업비 지원(사업당 최대 1.3억원 지원)
 - ※ 사업대상 국가 및 사업범위에 따라 상이,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한 적정 사업비 선정 예정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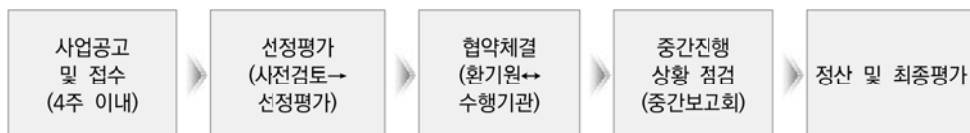
- 매년 상반기(정기, 4주 이내) 지정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 신청서 접수
 - ※ 지정공모 : 환경부 및 환경원에서 접수된 개도국·국제기구 제출 제안서 검토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 공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공지사항에서 공고 확인 후, 기간 내 제출서류(신청서, 제안서 등) 방문·우편 접수

제출 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제안서(소정양식) 10부 (USB 1매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신용등급 확인서 사본, 전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예비타당성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보고서 사본, 그밖에 필요한 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환경부 국제협력과 ☎ 044-201-656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 02-2284-1607

2022년 정부지원 환경사업 종합안내서(상)

발행일 : 2022년 1월

발행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산업혁신과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전 화 : (044)201-6702, 6703

팩 스 : (044)201-6700



